다산학 46호 (2025.6) | 031~088

『주례周禮』의 "법灋"과 "대사구大司寇"의 덕형德刑 사상에 대한 일고찰

[《周礼》之"灋"与《大司寇》德刑思想发微]

펑린[彭林] | 칭화대학교 인문학원 교수

번역: 강혜령 (성균관대 유학동양한국철학과 박사수료)

목차

1. 『주례』의 "법灋"은 "형법刑法"의 의미가 아니다
2. 『주례』의 법치 체계
3. "대사구" 관법官法의 차례와 사법司法 취지
4. "대사구" 중 형벌과 무관한 열두 속관屬官
5. 확장 논의: 법灋과 "연성법(軟法)", 형刑과 덕형德刑

전해지기로, 『주례周禮』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위하여 제정한 관제와 정치 법규로, 문장은 수만 자에 달하며, 정치 내용은 여섯 편으로 나뉘고, 천지 사방을 널리 포괄하며, 학문과 정치술을 함께 아우른다. 손이양孫詒讓은 이를 황제黃帝, 전욱顓頊 이래의 전형 제도를 참작하고, "손실과 이익을 헤아려, 이전의 전적들을 계승 및 누적하여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에 이르러 집대성한 것으로, 그 경세의 대법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1]라고 하였고, 또한 "체계가 크고, 사유는 정밀하여, 크고 작은 것을 모두 꿰뚫고 있다."[2]라고 평가하였다. 이 책을 읽어보면 마치 산에 의지하여 구리를 주조하고, 바다를 끓여 소금을 만드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본고는 『주례』에 나타난 "灋법" 자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주대周代의 사법 사상을 논하며, 선진先秦 유가의 사회 관리 메커니즘 및 그 덕형德刑 이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1. 『주례』의 "법灋"은 "형법刑法"의 의미가 아니다

『주례』에는 고문자古文字와 기이한 글자가 다수 등장하며, 그 수는 삼십 자가 넘는다. 또한 이 중 다수는 오직 이 책에서만 볼 수 있으며, 설

---

* 본 번역문의 본문에는 한국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고려하여 번체자와 한국어 표기법을 적용하였다. 각주는 [저자 주(이하 '[저]'로 표기)]와 [역자 주(이하 '[역]'으로 표기)]로 구분하였고, [저자 주]는 원문에서 저자가 각주의 형태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이며, [역자 주]는 저자가 고전의 원문을 인용하면서 각주를 달지 않았을 때 역자가 각주의 형태로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형식을 살리기 위해 간체자와 중국어 표기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1) [저] "斟酌損益, 因袭积累, 以集于文武, 其经世大法, 咸粹于是."(손이양, 『주례정의』, 왕문금 · 진옥하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 1997, 1쪽 참조)

2) [저] "体大思精, 竑纡毕贯."(같은 책, 2710쪽 참조)

령 다른 책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더라도 그 글자의 뜻이 서로 다르다. "灋" 또한 그중 하나이다. 『주례』의 경문에서는 "灋"으로 쓰이고, 주注와 소疏에서는 모두 "法법"으로 되어 있는데 두 글자는 구분되어야 하며, 본고에서는 논지 상의 필요에 따라 경문의 "灋"자를 그대로 유지한다. 『주례』 전서에서는 약 150회 이상 등장한다. 손이양은 "경문에는 모두 '灋'으로 되어 있고, 주석에는 모두 '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경문이 고자古字를 쓰고, 주문은 금자今字를 쓴 것이다."[3]라고 하였으며, 경문에 灋으로 쓰고, 주와 소에서는 '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대와 현대의 문자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치鷹부에는 "灋은 刑형이라는 뜻이다. 공평하기를 물처럼 평평하게 한니, 물(水)을 부수로 한다. 해태(鷹)가 바르지 않은 자를 들이받아 제거하는 것을 따른다."[4]라고 하였다. 『경전석문經典釋文』에서는 "灋은 고대의 법法자이다."[5]라고 하였다. 즉 한대漢代와 당대唐代 학자들은 "灋"을 "형법刑法"의 고문자로 이해하였다.

灋자는 양 주(西·東周) 시대의 금문金文에서도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사리궤師釐簋"의 "일을 행함에 있어 밤낮없이, 내 명을 어기지 말라.", "대우정大盂鼎"의 "공경하고 바르게 하되, 내 명을 어기지 말라.", "사유궤師酉簋"의 "밤낮으로 삼가며, 내 명을 어기지 말라.", "사호궤師虎簋"에 "밤낮으로 삼가며, 내 명을 어기지 말라."와 "내 명을 어기지 말고, 법으로써 선왕을 보호하라."고 하였다. "채궤蔡簋"에는 "밤낮으로 삼가되, 정령을 어기지 말라.", "대극정大克鼎"에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내 명을 어기지 말라.", "사극수師克盨"에는 "밤낮으로 삼가되, 정

3) [저] "凡经皆作灋, 注皆作法, 经例用古字, 注例用今字也."(같은 책, 63쪽 참조)
4) [역]《说文》鷹部云. "灋, 刑也.平之如水, 从水.鷹所以触不直者去之, 从鷹去."
5) [역]《经典释文》云. "灋, 古法字."

령을 어기지 말라." 등의 기록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는 "내 명을 어기지 말라(勿灋朕命)."라고 하는 금문의 상용 어구였음을 보여준다.[6)]

선진 문헌에도 금문과 대응되는 표현이 있는데, 모두 "내 명령을 폐하지 말라(勿廢朕命)."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경詩經』, 「대아大雅·한혁韓奕」에서는 "왕이 친히 명령을 내려, 조상들의 업적을 계승하게 하였으니, 내 명령을 폐하지 말고, 밤낮없이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좌전左傳』 양공襄公 14년에는, 왕이 유정공劉定公을 보내 제후齊侯에게 "이 명령을 경외하고, 내 명을 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수계隨季가 조장자趙莊子에게 말하기를, "옛날 평왕平王이 우리 선군先君 문후文侯에게 명하여 '정鄭나라와 함께 주나라 왕실을 협력하여 보좌하고, 왕명을 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한다. 선공宣公 12년에도 "왕명을 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보이며, 애공哀公 11년에는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군주를 섬기되, 공경하여 명을 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청화간清華簡 『봉허지명封許之命』에도 "너의 계획을 경건히 따르고, 주나라를 길이 번영케 하며, 나의 명을 어기지 말고(勿灋朕命), 대대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모두 금문에 부합한다. 이는 금문에서 "灋"과 "廢폐"가 서로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7)]

금문에서 灋자가 "廢"자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우정"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이 너를 도와, 선왕先王을 지키게 하노라."고 하였다. 왕

6) [역]《师酉簋》. "用事夙夜, 勿灋朕命"; 《大盂鼎》. "若敬乃正, 勿灋朕命"; 《师酉簋》. "敬夙夜, 勿灋朕命"; 《师虎簋》. "敬夙夜, 勿灋朕命", "勿灋朕命, 法保先王"; 《蔡簋》. "敬夙夕, 不灋政令"; 《大克鼎》. "敬夙夜用事, 勿灋朕令"; 《师克盨》. "敬夙夕, 不灋政命."

7) [역]《诗·大雅·韩奕》. "王亲命之, 缵戎祖考, 无废朕命, 夙夜匪懈"; 《左传》. "敬之哉, 无废朕命", "昔平王命我先君文侯曰: 与郑夹辅周室, 毋废王命!"; "奉尔君事, 敬无废命!"; 清华简: 《封许之命》有"祗敬尔猷, 以永厚周邦, 勿灋朕命, 经嗣世享"语, 皆与金文合.是金文"灋"与"废"通用之例.

국유王國維는 이를 "灋을 廢로 읽되, 廢는 크다는 뜻이다."[8]라고 해석하였다. 장정랑張政烺의 『서주청동기명문분대사징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征』[9]도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진몽가陳夢家의 『서주동기단대西周銅器斷代』는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따라 "상常"[10]으로 풀이하였다. 요컨대, 이들 모두 형법刑法이라는 글자와는 관련이 없다.

『수호지진묘죽간睡虎地秦墓竹簡』에는 "군중軍中에서 식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가 받으면, 모두 갑옷 두 벌을 벌금으로 내고, 灋한다."[11]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곧 군창軍倉에서 부당하게 양식을 수령한 자에게 갑옷 두 벌을 몰수하고, 직책을 박탈하여 영구히 복직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때의 灋자도 廢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례』에서 "灋"자는 책 전체를 관통하여 사용되었고, 눈에 띄는 곳마다 나타난다. 이는 선진 시대 법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의 灋 해석은 금문이나 『시경』, 『좌전』 등과도 차이를 보이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전례典禮와 문물제도, 통칭하여 법灋이라 함

옛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같은 뜻을 표현할 때마다 자주 다른 글자로 교체하여 사용하곤 했다. 『주례』, 「천관天官」 '대재

8) [저] 《大盂鼎》. "故天翼临子, 灋保先王", 王国维"灋读为废, 废, 大也."(왕국유, 『우정명고석』; 『관당금고문고석』; 『왕국유유서』 제6책, 상하이: 상하이고적서점, 1983, 2쪽 참조)

9) [저] 장정랑, 『서주 청동기 명문 시대 구분의 역사적 증거』, 베이징: 중화서국, 1986, 174쪽 참조.

10) [저] 진몽가, 『서주 동기 단대』, 베이징: 중화서국, 2004, 103쪽 참조.

11) [저] "不当稟军中而稟者, 皆赀二甲, 灋."(『수호지 진묘 죽간』, 베이징: 문물출판사, 1990.)

大宰’에서는 육전六典, 팔법八法, 팔칙八則을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圭臬)으로 삼았는데, ‘전典’ ‘법法’ ‘칙則’ 세 글자는 실제로는 의미가 다르지 않다. ‘대재’에서 “나라의 육전을 세우는 일을 맡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은 주석에서 “典이란 일정한 것이고, 경經이며, 법法이다.”[12]라고 하였는데, 典과 灋은 동의어라는 것이다. 또 대재는 “팔칙”으로 도성과 변방을 다스린다고 했고, 정현은 주석에 “則 또한 法이다.”[13]라고 설명하였다. 가공언은 소에서 “典, 法, 則 세 가지는 서로 뜻이 통하며, 의미가 같다. 다만, 나라(邦國)에서는 典이라 하고, 관부官府에서는 法이라 하며, 도읍과 변방(都鄙)에서는 則이라 하여, 사용되는 장소만 다를 뿐, 실제 의미는 통한다.”[14]라고 하였다. 손이양의 『정의』에서는 “典과 法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도이며, 항상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經과 常으로 풀이한다.”,[15] “모든 전례典禮와 문서 제도를 통칭하여 法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16] ‘대재’의 “팔칙으로 도읍과 변방을 다스린다.”에 대해 손이양은 “기내畿內와 채읍采邑을 다스리는 통일된 법이다.”라고 하였다.[17]

12) [저]《大宰》. “掌建邦之六典”, 郑注. “典, 常也, 经也, 法也.”(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44쪽 참조)

13) [저]《大宰》. “八则”治都鄙, 郑注. “则, 亦法也.”(같은 책, 47쪽 참조)

14) [저] 贾疏. “谓典、法、则三者相训, 其义既同.但邦国言典, 官府言法, 都鄙言则, 是所用处异, 故别言之, 其实义通也.”(같은 책, 48쪽 참조)

15) [저] 孙诒让《正义》云. “典、法者, 治之大经, 可以常行者, 故又训经、训常.”(손이양, 『주례정의』, 왕문금 · 진옥하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 1997, 60쪽 참조)

16) [저] “凡典礼文制通谓之法.”(같은 책, 63쪽 참조)

17) [저]《大宰》. “以八则治都鄙”, 孙诒让云. “治畿内采邑之通法也.”(같은 책, 67쪽 참조)

2) 육관六官 소속 부서마다 그 법灋을 가짐

『주례』의 육관六官 각각에는 60명의 속관屬官이 있으며, 360개의 직관職官 모두 그에 맞는 운용 가능한 灋이 존재하고, 또한 서로 얽혀 정밀한 관리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다. '대재'에는 "팔법으로 관부官府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으며, 정현의 주석에는 "육六은 관법官法이다."라고 한데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관법이란 각 직책이 맡고있는 바의 법도法度를 말한다. 관직은 제사, 축문, 조회, 회동, 사신 접대 등을 주관하며 모두 각자 고유한 법도가 있다."[18] 이하 몇 가지 예를 간략히 들며 그 체계를 살펴보겠다.

예를 들어, 의례상의 자리에서는 신분과 작위에 따라 서는 위치가 다르다. 「천관·재부宰夫」에는 "조회하는 법도를 관장하여 왕과 삼공三公, 육경六卿, 대부大夫, 군리群吏의 자리(位)를 바로잡는다."[19]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천자天子 및 삼공 이하의 조회 시 서열과 자리 배치를 재부가 담당함을 의미한다. 「추관秋官·조사朝士」에는 "나라 외조外朝의 灋을 관장하여",[20] 천자에게는 다섯 개의 문이 있으며, 고문庫門 밖이 외조이다. 나라에 위기가 있거나 천도遷都나 군주를 세우는 등의 중대사를 다룰 때는 군신群臣과 만민萬民을 이곳에 모아 의논하였다. 고경孤卿·대부·군사群士,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 및 군리, 삼공·주장州長·중서眾庶 등이 모두 참여하며, 이때 서 있는 위치는 조사가 정하였다. 만약 사례(射禮, 활쏘기 예식)를 거행할 경우, 장소는 조회와 다르다. 「하관

18) [저]《大宰》. "以八法治官府", 郑注"六曰官法"云. "官法谓职所主之法度, 官职主祭祝、朝觐、会同、宾客者, 则皆自有其法度."(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24쪽 참조)

19) [역]《天官•宰夫》. "掌治朝之灋, 以正王及三公、六卿、大夫、群吏之位."

20) [역]《秋官•朝士》. "掌建邦外朝之灋."

夏官·사인射人」에는 "나라의 삼공, 고孤, 경卿, 대부의 자리를 관장한다. 삼공은 북쪽을 향하고, 고는 동쪽을 향하며, 경과 대부는 서쪽을 향한다."[21]라고 하였다. 또한 "사례의 灪으로 활쏘기 예식을 다스린다."[22]라고 하였는데, 예컨대 왕이 여섯 쌍(六耦)으로 삼후三侯를 상대로 활을 쏘아, 세 번 맞히고 세 번 사양하는 등의 절차가 있었다.

「천관」이 관할하는 여관女官 체계 역시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부직지법婦職之灪', '부학지법婦學之灪', '부식지법婦式之灪' 등이 그것이다. '내재內宰'에서는 "부직지법婦職之灪으로 구어九禦를 교육하여 각각 맡은 일을 가지게 하며, 그 복장을 바로잡고, 기이하거나 편벽된 것을 금하며, 그 공적을 기록한다."라고 하였다. 관장하는 범위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부인들의 직업상의 방법(직물, 직조, 바느질 등)을 구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어들의 일상 복장과 덕성이 예에 맞는지를 감독하고 그 업적을 기록하는 것이다. '구빈九嬪'에서는 "부학지법을 관장하여, 구어에게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을 가르친다."라고 하였다. 구어는 왕이 연침燕寢에서 쉴 때를 시중드는 빈부嬪婦들이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부덕은 정숙하고 순종하는 것, 부언은 말하고 응답하는 것, 부용은 부드럽고 단아한 태도, 부공은 명주나 삼베를 다루는 솜씨"[23]라고 하였다. 이상은 모두 왕과 함께 지낼 때 처신하는 방법이다. '전부공典婦功'에서는 "부식지법을 주관하여, 빈부 및 궁중 여인들의 여성 노동 관련 업무를 가르친다."라고 하

21) [역]《夏官·射人》. "掌国之三公、孤、卿、大夫之位, 三公北面, 孤东面, 卿、大夫西面."

22) [역] "以射灪治射仪."

23) [저]《内宰》. "以妇职之灪教九御, 使各有属.正其服, 禁其奇衰, 展其功绪"; 《九嫔》. "掌妇学之灪, 以教九御妇德、妇言、妇容、妇功", 郑注. "妇德谓贞顺, 妇言谓辞令, 妇容谓婉娩, 妇功谓丝枲."(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 출판사, 2022, 200쪽 참조)

였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부식婦式이란 부인 업무의 모범을 의미하며, 법이란 재물 사용에 관한 오래된 규칙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사제事齎란, 여공女功의 일을 위해 실과 삼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24]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내재'가 주관하는 바는 외모와 덕성에 중점을 두었고, '구빈'이 맡은 바는 왕과 함께 처신하는 도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부공'이 맡은 바는 부녀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절차와 규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셋은 각각 주된 업무가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룬다.

춘관春官이 관할하는 신직神職의 인원은 상당히 많지만, 서로 혼동되지 않고, 분업이 엄격하며, 각자 자신의 법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춘관·대복大蔔」에서는 "삼조지법三兆之灋을 주관한다."[25]라고 하였는데, 이는 옥조玉兆, 와조瓦兆, 원조原兆를 말한다. 이들 경조經兆의 체계는 각각 120개로 되어 있고, 그에 관한 송문頌文은 1200편에 이른다. 또 "삼역지법三易之灋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는데, 『연산連山』, 『귀장歸藏』, 『주역周易』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기본 괘가 여덟 개이고, 세부 괘는 각각 64개씩 있다. 또 "삼몽지법三夢之灋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는데, 지몽致夢, 기몽觭夢, 함척咸陟을 가리킨다. 「춘관·시침視祲」에서는 요상妖祥을 관찰하고 길흉을 판별하는데, "십휘지법十煇之灋"이 있고,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요상은 선악의 징조이며, 정사농鄭司農은 '휘煇란 햇빛의 기운이다'라고 하였다."[26]라고 한다. 십휘十煇는 해 주변에 나타나는 열 가지 종류의 광기光氣를 말한다. 「춘관·가종인家宗人」에서는 "모

24) [저]《典妇功》. "掌妇式之灋, 以授嫔妇及内人女功之事赍", 郑注. "妇式, 妇人事之模范.法, 其用财旧数." "事赍, 谓以女功之事来取丝枲."(같은 책, 2022, 204쪽 참조)

25) [역]《春官•大卜》. "掌三兆之灋."

26) [저]《春官•视祲》. "十煇之灋", 郑注. "妖祥, 善恶之徵.郑司农云: 煇谓日光炁也."(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668쪽 참조)

든 신시神示는 삼신지법三辰之灋을 주관하여 귀신이 머무는 장소를 알아내고, 각 신의 명칭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물供物을 판별한다."[27] 라고 하였다. 여기서 신시란 무당(巫)이며 삼신三辰(즉 해·달·별)의 법칙을 이용해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가 거주하는 곳을 찾는 일을 말한다.

하관夏官은 각종 무기를 관장하며, 무기의 명칭과 용도에 따라 사병司兵, 사과순司戈盾, 사궁시司弓矢 등이 각각 나누어 관리하였다. '사병'에서는 "오병五兵과 오순五盾을 주관하고, 각각 그 물건과 등급을 구별하여 군사에 대비한다."[28]라고 하였다. 오병이란 과戈, 수殳, 극戟, 추모酋矛, 이모夷矛를 가리킨다. '등等'은 제작의 우열, 정밀도와 거칠기 등에 따른 차이를 뜻한다. 관리 내용에는 "수병授兵"이 포함되는데, '사마법司馬法'에 따라 각 군대에서 병사 수를 보고하면 그에 맞춰 병기를 지급하였다. 또 "병수兵輸"는 군대가 귀환할 때 이전에 지급했던 병기를 회수하는 것을 말하고, "용병用兵"의 경우, 병사가 외부에 주둔하여 방어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병기의 수수 절차를 거쳤다. 이 외에도 제사와 상례에 필요한 병기를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사고순'에서는 "사고순은 과순戈盾(창과 방패)을 주관하고 이를 배포한다."[29] 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왕을 호위하는 여분씨旅賁氏에게 수殳(길이 한 길 네 자 되는 장병기)를 지급하며, 예식 무용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병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군사 행사나 회합 시에는 부거副車에 사용될 과순과 왕이 탑승하는 수레에 꽂는 과순, 여분旅賁과 호사虎士에게 과순을 지급하는 일도 맡았다. 도착지에 이르

27) [역]《春官•家宗人》. "凡以神仕者, 掌三辰之灋, 以犹鬼神示之居, 辨其名物."
28) [역]《司兵》. "掌五兵、五盾, 各辨其物与其等, 以待军事."
29) [역]《司戈盾》. "司戈盾掌戈盾之物而颁之."

면 방위용 방패를 설치하고, 출발할 때는 이를 철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사궁시'에서는 "육궁六弓, 사노四弩, 팔시八矢의 瀳을 주관하며, 그 명칭과 물품을 구별하고, 보관 및 출납을 관리한다."[30]라고 하였다. 육궁·사노·팔시 각각은 이름과 규격상의 굽음, 곧음, 길이 등이 정해져 있었다. 중춘中春 시기에는 궁노弓弩를 바치고, 중추中秋 시기에는 화살과 가죽 화살통을 바쳤다. 이 외에도 제사, 택궁澤宮, 대사大射, 연사燕射, 대상大喪, 군역師役, 회동會同, 사냥(田弋) 등의 행사에 필요한 궁시弓矢를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천관·내재」에서는 "서판도지법書版圖之瀳을 주관한다."[31]라고 하였다. 여기서 '판版'은 궁중의 혼시閽寺 및 궁내 관원의 자제들의 명부를 뜻하고, '도圖'는 왕과 왕후, 세자의 궁중 관부의 형상을 가리킨다. 또한 정령政令은 혼시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가리킨다. 「춘관·내사內史」에서는 "서사지법敘事之瀳을 주관하여 방문을 접수하고, 왕에게 보고하여 청치聽治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가공언의 소에 따르면, 이 '서사敘事'는 '소재小宰'의 '육서六敘'를 가리키며, 이는 "곧 왕이 정사를 다스리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32]라고 한다. 「춘관·소사小史」에서는 대제사大祭祀, 대상大喪, 대빈객大賓客, 대회동大會同, 대군려大軍旅 때 "예법禮瀳을 낭독한다."라고 하였고, 그 내용은 소목昭穆(조상의 서열)이나 조궤俎簋(제기)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춘관·대사악大司樂」에서는 "성균지법成均之瀳을 주관한다."[33] 하여 나라의 교

30) [역]《司弓矢》. "掌六弓四弩八矢之瀳, 辨其名物, 而掌其守藏与其出入."

31) [역]《天官•内宰》. "掌书版图之瀳."

32) [저]《春官•内史》. "掌叙事之瀳, 受纳访, 以诏王听治", 贾疏: 此叙事即《小宰》之"六叙", "是其听治之法也."(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705쪽 참조)

33) [역]《春官•大司乐》. "掌成均之瀳."

육 행정(學政)을 관리하는 것이고, 「추관·사맹司盟」에서는 "맹재지법盟載之灋을 주관한다."[34]라고 하는데, 이는 제후국 간의 동맹 기록과 관련된 예법을 관리하는 것이다.

왕이 사용하는 수레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기에, 이에 상응하는 灋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하관·제복齊仆」은 외교 활동 시 금로金路라는 수레를 사용하는 "법의灋儀"를 주관하였다. 예컨대 조근朝覲, 종우宗遇(종묘 참배), 향식饗食(연회) 등의 경우에는 모두 금로를 타야 했고, 이에 따른 영송迎送의 의례 절차도 따로 정해져 있었다. 「하관·도복道仆」에서는 아침저녁 조회와 연회에 출입할 때 상로象路라는 수레를 몰도록 관리하는데, "그 법의灋儀는 제차齊車와 같다."[35]라고 규정되어 있다.

종합하면, 『주례』 치국治國의 법은 먼저 육전 등의 대법大法으로 나뉘고, 이어 각 속관으로 다시 분화되어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기능 부서의 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치국의 이상이 최말단까지 실현되었으며, 각 부서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하나의 완전한 전체를 이룬다.

3) 법灋은 곧 식법式法을 뜻함

『주례』에 나타나는 灋은 사용 범위가 매우 넓지만, 그중에서도 "식법式灋"이 가장 자주 등장하며, 대략 구분하면 다음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규격의 높낮이(規格高低)

조근朝覲, 제사祭祀, 회동會同, 빈객賓客 등의 의식에는 반드시 층급層

34) [역]《秋官•司盟》. "掌盟载之灋."

35) [역]《夏官•道仆》. "其灋仪如齐车."

級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는 예기禮器나 생뢰牲牢 등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사에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구분되며, 예절과 절차가 모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오랜 세월을 거쳐 이러한 규범이 고정되어 "구법식舊法式"이 되었다. 「천관·재부」에는 "식법式灋으로 제사의 준비물을 주관하고, 제물(薦羞)을 관리하며, 대재大宰를 따라 세척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공언의 소에 따르면, "식법이라 함은 제사의 크고 작음에 따라 모두 정해진 구법식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점검하게 함을 뜻한다."[36]라고 해설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주례』의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조의 법식(營造法式)

제후가 나라를 세우거나 도읍을 건설할 때, 도성의 크기, 성문, 시장, 도로, 도랑 등의 배치는 모두 "구법식"을 따라야 한다. 「하관」 '량인量人'에서는 "건국의 灋을 주관하여 나라를 9개의 주州로 나누는 일을 주관하였다. 나라의 성곽을 조영하고, 후궁을 조성하며, 시장과 조정, 도로와 골목, 문과 도랑을 측량하여, 도읍을 세우는 일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정현은 주석에서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구법식이 있다."[37]라고 하였다. 「하관·장고掌固」에서는 "성곽이나 구지溝池 및 수구樹渠(물길을 파고, 그 양쪽에 나무를 심는 일)를 견고하게 보수하는 일을 주관한다."라고 하였으며, "모든 수직자는 灋을 받아 맡은 정무를 통달케 한다.", "만약 도읍을 건설할 경우에 그 견고함을 다스리고, 지키는 灋을 함께 갖추

36) [저]《天官•宰夫》. "以式灋掌祭祀之戒具, 与其荐羞, 从大宰而视涤濯", 贾疏. "言'式法'者, 谓祭祀大小, 皆有旧法式, 依而戒敕, 使共具之."(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 『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66쪽 참조)

37) [저]《夏官•量人》. "掌建国之灋, 以分国为九州.营国城郭, 营后宫, 量市朝、道巷、门渠, 造都邑亦如之", 郑注. "立国有旧法式."(같은 책, 86쪽 참조)

어야 한다."라고 하였다.[38] 또한 도성 사방 교외(四郊) 밖의 육수六遂 지역의 구획 작업도 전담 관리자가 있었다. 「지관地官·수인遂人」에서는 "토지의 지도를 근거로 전야田野를 경영하며, 군현과 촌락의 형태를 만드는 瀍을 주관한다."[39]라고 하였다.

수수의 법(授受之法)

새와 짐승의 취급에도 모두 "공용식법公用式瀍"과 "뇌례지법牢禮之瀍"이 있어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였다. 「천관·포인庖人」에서는 육축六畜, 육수六獸, 육금六禽을 관리하여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는데, "모든 새와 짐승을 헌납할 때에는 瀍에 따라 지급하며, 출입 역시 이에 따른다."라고 하였다. 정현은 주석에서 "손님이 도착하면 짐승을 헌납하는데, 포인이 수인獸人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며, 반드시 헌납해야 할 수량을 문서로 기록하여 주고받는다."[40]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손님에게 제공하는 새나 짐승의 수량 역시 "헌납해야 할 정해진 수량"이 있었다. 또한 「천관·재부」에서는 "조회, 회동, 빈객 접대 시 뇌례지법에 따라 제수(祭牲), 적재물(委積), 식사 제공(膳獻), 음식, 손님에게 하사하는 음식(賓賜之飧牽)과 그 진열 수량을 관리한다."라고 하였다. 이때 의식의 격식 및 참석자의 신분에 따라 제공되는 수량이 달랐다. 「천관·직폐職幣」에서는 "식법을 주관하여 관부, 도비都鄙 및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38) [역]《夏官•掌固》. "掌修城郭、沟池、树渠之固", "凡守者受瀍焉, 以通守政", "若造都邑则治其固, 与其守瀍."

39) [역]《地官•遂人》. "以土地之图经田野, 造县鄙形体之瀍."

40) [저]《天官•庖人》. "凡令禽献, 以瀍授之, 其出入亦如之", 郑注. "宾客至, 将献之, 庖人乃令兽人取之, 必书所当献之数与之."(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85쪽 참조)

지급할 화폐를 징수하며, 각 담당자들의 잉여 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한다.", "모든 국가 회합 업무는 식법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하였다. 가공언은 소에서 "직폐는 잔여 화폐를 관리하며, 여러 관서에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식법에 따라야 한다."[41]라고 하였다. 관부와 도비 등의 지역에서 매년 공적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남게 되면, 사적으로 남겨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두 직책을 맡은 화폐 담당자가 법에 따라 거두어야 한다.

기술 규범(技術規範)

『주례』에는 기술부서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술을 빚는 작업은 쌀과 누룩의 배합 비율, 제조 절차, 온도,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까지도 엄격히 요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서의 "식법"은 기술 지침까지 포괄하고 있다. 「천관·주정酒正」에서는 "술에 관한 정령政令을 관장하고, 식법에 따라 술의 재료를 지급한다. 공적인 술을 만드는 경우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식법은 술을 담그는 규범이다. 술을 빚을 때는 쌀과 누룩의 분량이 정해져 있고, 술을 잘 빚고 거르는 솜씨 또한 필요하다."[42]라고 하였다.

수량 및 치수(數量與丈尺)

「천관·대부大府」에서 구부九賦(아홉 가지 부세)를 분배할 때에도 반드

41) [저]《天官•宰夫》. "凡朝覲、会同、宾客, 以牢礼之灋掌其牢礼、委积、膳献、饮食、宾赐之飧牵与其陈数"; 《天官•职币》. "掌式灋以敛官府都鄙与凡用邦财者之币, 振掌事者之余财", "凡邦之会事, 以式灋赞之", 贾疏. "职币主余币, 给诸官之用, 亦依式法与之."(같은 책, 158쪽 참조)

42) [저]《天官•酒正》. "掌酒之政令, 以式灋授酒材.凡为公酒者, 亦如之", 郑注. "式法, 作酒之法式.作酒既有米曲之数, 又有功沽之巧."(같은 책, 110쪽 참조)

시 식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재물을 분배할 때는 식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하였다. 가공언은 소에서 "식법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은, 기존의 법식에 정해진 수량을 기준으로 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43]라고 해석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천관·직세職歲」에서는 나라의 부세 출납을 관장하는 직책에 대해, "관부, 도비, 군리群吏 등이 사용하는 재정도 모두 매년 정해진 식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모든 관리의 공적 지출의 규범과 액수는 매년 직무를 맡을 때 이전 지출 기록에 따라 집행한다."[44]라고 한다. 「천관·장피掌皮」는 가을과 겨울 동안 가죽을 수집하고, 봄이 되면 "식법에 따라 백공百工에게 가죽을 분배하여, 털을 사용해 모포를 만들어 국가 용도로 준비한다."라고 하였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식법은 물건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수량에 대한 과거 규정이다."라고 하였다. 가공언은 "예를 들어, 구씨裘氏가 가죽옷을 만들거나, 함인函人이 갑옷과 투구를 제작할 때, 가죽과 부속품의 수량이 모두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른 옛 규범이 존재한다."[45]라고 덧붙였다.

『주례』에서의 재물材物에 대한 관리의 엄밀함은 세밀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자가 궁궐을 나설 때 임시로 머무는 휴식처를 "차次"라고 불렀는데, 형태는 장막과 비슷하였다. 「천관·장차掌次」에서는 "왕이 거처할 임시 거처(次)의 纁을 주관하여, 필요할 때 설치하

43) [저]《天官•大府》. "凡颁财, 以式灋授之", 贾疏. "以式法授之者, 谓以旧法式多少授与九式, 故云以式法授之."(같은 책, 143쪽 참조)

44) [저]《天官•职岁》. "凡官府都鄙群吏之出财用, 受式灋于职岁", 郑注. "百官之公用式法多少, 职岁掌出之旧用事存焉."(같은 책, 157쪽 참조)

45) [저]《天官•掌皮》. "遂以式灋颁皮革于百工, 共其毳毛为毡, 以待邦事", 郑注. "式法, 作物所用多少故事." 贾疏. "作若裘氏作裘、函人作甲胄, 谓皮革皆有用物多少之数, 有旧法者也."(같은 책, 165쪽 참조)

는 일을 대비한다."라고 하였고,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灋이란 크기와 치수 규정을 의미한다."[46]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자의 임시 거처조차도〉 구체적인 규격과 치수에 따라 엄정히 관리된 灋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4) 법灋, 혹 덕행德行과 도예道藝를 가리킴

매년 정월 초하루 날(正月之吉)에 대사도는 교법教法을 상위象魏(큰 대문 또는 기둥, 또는 공적인 장소)에 걸어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읽게 하였다. 주장州長, 당정黨正 등 각급의 민정 담당 관리들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백성들을 모아 "법을 읽게(讀法)" 하였다. 법을 읽는 빈도는 상당히 높아, 매년 40회 이상에 달했고, 월평균 3회 이상 열렸는데, 이를 보면 매우 강한 법치주의의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주례』가 곧 법가法家 계열 저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47] 그러나 경문經文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주장」: 정월 초하루날에 각기 자신의 주州에 속한 백성들을 모아 灋을 읽게 하여, 그들의 덕행과 도예를 심사하고, 칭찬할 건은 권장하며, 잘못은 바로잡아 경계하게 하였다. 또한 연중 제사 지낼 때에도 주민을 소집하여 灋을 읽게 하였으며, 그 방식은 평소와 같았다. ……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주의 정령政令을 종합하고,

46) [저]《天官•掌次》. "掌王次之灋, 以待张事", 郑注. "法, 大小丈尺."(같은 책, 138쪽 참조)
47) [저] "《周礼》乃法家著作."(고힐강, 「주공 제례의 전설과 『주관』이라는 책의 출현」, 『문사』, 1979년 제6호.)

새해가 시작되면 다시 처음처럼 교법教灋을 읽게 하였다.

「당정」: 정월이 되면 백성들을 모아 灋을 읽게 하고, 그들의 덕행과 도예를 기록하였다.

「족사族師」: 매월 초하루마다 백성들을 모아 나라의 법(邦灋)을 읽게 하고, 그 중 '효도, 우애, 화목, 친애'한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기록하였다. 봄, 가을로 포신에게 제 지낼(祭酺)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행하였다.

「여서閭胥」: 봄·가을의 제사, 부역과 정사(役政), 상례의 예식 등의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을 모아 행사를 치른 후에 灋을 읽게 하고, 그 중에서 공경하고 민첩하며 타인을 돌보는 자들을 기록하였다.[48)]

위에서 열거한 주州, 당黨, 족族, 여閭에서의 독법을 보면, 읽는 내용은 각종 형벌 조항이 아니라, "덕행과 도예", "효도와 형제간 우애", "공경과 민첩, 타인을 돌보는 행위" 등과 같은 덕목이었다. 이는 매우 뚜렷한 유가적 색채를 띤 "교법"이며, 법가의 법률과는 무관하므로, 절대 글자만을 보고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각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읽게 하는 제도는, 대사도의 교법을 민간에까지 확산시키려는 의도

48) [역]《州长》. "正月之吉, 各属其州之民而读灋, 以考其德行道艺而劝之, 以纠其过恶而戒之.若以岁时祭祀州社, 则属其民而读灋, 亦如之. …… 岁终, 则会其州之政令.正岁, 则读教灋如初."; 《党正》. "正岁, 属民读灋, 而书其德行道艺."; 《族师》. "月吉, 则属民而读邦灋, 书其孝弟睦姻有学者.春秋祭酺, 亦如之."; 《閭胥》. "凡春秋之祭祀、役政、丧纪之数, 聚众庶.既比, 则读灋, 书其敬敏任恤者."

였음이 분명하다.

교법의 내용은 도덕 교육 외에도, 시골 마을에서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예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역시 모두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지관·당정黨正」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국가가 제사를 올려 귀신에게 기원할 때에는 예법에 따라 백성을 소집하고, 서당序堂에서 술자리를 마련하며, 연령과 작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정한다. 첫 번째 임명은 향리鄕里의 연장자 순으로 하고, 두 번째 임명은 본가(父族)의 연장자 순으로 하되, 세 번째 임명에서는 나이로 정하지 않는다. 그 당黨 안에서의 제사, 장례, 혼례, 관례, 음주 등의 모든 행사에 대해 예법을 가르치고, 금지와 규범을 관리하였다. 백성들이 병사로서 훈련하거나, 밭을 갈거나, 밖으로 출행하거나, 부역을 수행할 때는 각종 灋을 가지고 정치·행정을 처리한다.[49]

위의 활동들은 모두 "예로써 백성을 결속시키고", "예사禮事를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앞서 언급된 "덕행과 도예", "효도, 우애, 화목, 친애"와 긴밀히 연관된다. 이는 곧 공자孔子가 말한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한다."[50]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구현된 것이다.

이상은 필자가 『주례』에 나타난 灋자의 의미를 두루 살펴본 후 얻은

---

49) [역]《地官·党正》. "国索鬼神而祭祀, 则以礼属民而饮酒于序, 以正齿位: 壹命齿于乡里, 再命齿于父族, 三命而不齿.凡其党之祭祀、丧纪、婚冠、饮酒, 教其礼事, 掌其戒禁.凡作民而师、田、行、役, 则以其灋治其政事."

50) [역] "道之以德, 齐之以礼."

결론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글자는 관리의 직무, 전례의 규격, 의식의 절차, 수량의 기준, 기술의 공정, 규격의 치수 등에 걸쳐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구유舊有", "구용사舊用事" 혹은 "관례慣例", "고사故事" 등으로, 집행과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형법의 의미와는 무관하다.

2. 『주례』의 법치 체계

『주례』에 빈번히 등장하는 灋자는 형법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례』가 덕치德治만으로 사법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상 국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기술한 문서로서, 『주례』의 사법 체계와 심국審鞫 절차는 완전하고 엄격하며,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장소에 헌법을 게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와 백성 모두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벌로 다스린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천관·소재小宰」
> 정월에 속관들을 거느리고서 상위에 걸어둔 치상의 법을 살펴보는데, 목탁을 울리며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정한 형벌로 처벌을 할 것이다."…모든 관부들에 명령하여 "각자 너희의 직분을 지키고, 너희의 관법을 준수하며, 너희의 직무를 완비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라. 받들지 못하는 자가 있

으면, 나라에서 중형을 내릴 것이다."

「지관·소사도小司徒」
정월에 속관들을 거느리고서 상위에 걸어둔 교법을 살펴보는데, 목탁을 울리며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정한 형벌로 처벌을 할 것이다."

「춘관·대사大史」
"무릇 법을 분별하는 자는 이를 조사하고, 신뢰하지 않는 자를 형벌에 처한다."
"만약 규약이나 헤아림 가운데 혼란이 생기는 경우, 법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형벌에 처한다. … 제사 거행일에는 의례서儀禮書를 들고 차례대로 자리에 서며, 일을 분별하는 자는 이를 살피고, 신뢰하지 않는 자는 주벌에 처한다."[51]

이로 보아 『주례』는 국가 정령을 시행함에 있어 확실히 강제적인 요소가 있으며,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나라에 일정한 형벌"과 "나라에 중한 형벌" 또는 "형에 처한다"와 "주살한다"라고 하여, 법치의 색채가 뚜렷하다.

둘째, 『주례』의 형벌 제도는 체계적이고 완전하다. '대사구'의 서관序官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추관 사구를 세워, 속관들

51) [역]《天官•小宰》. "不用灋者, 国有常刑！" …… 令于百官府曰. "各修乃职, 考乃灋, 待乃事, 以听王命.其有不共, 则国有大刑！";《地官•小司徒》正岁, 则帅其属而观教灋之象, 徇以木铎, 曰. "不用灋者, 国有常刑！";《春官•大史》. "凡辨灋者考焉, 不信者刑之"."若约剂乱, 则辟灋; 不信者刑之. …… 祭之日, 执书以次位常, 辨事者考焉, 不信者诛之."

을 통솔하게 하고 나라의 금령을 주관하게 하며, 왕을 도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형벌로 제재하게 한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금禁이란 간악한 자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며, 형刑이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법도를 의미한다."[52]

『주례』는 국가 중심 지역인 육향六鄕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수六遂, 현縣, 도가都家까지 확장되며, 각각의 지역에 형벌과 금령을 담당하는 관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고대의 전통에 따라 이들을 '사士'라 칭하였는데, 정현은 이에 대해 주석하기를 "사란 살피는 자이며, 옥송獄訟의 일을 살피는 것을 주관한다."[53]라고 하였다. 이처럼 빈틈없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 향사鄕士에 대해 정현은 "여섯 향鄕의 송사를 주관하였다."[54]라고 주를 달았다. 도성에서 100리 이내인 지역을 향이라 하며, 천자는 여섯 향, 제후의 대국은 세 향을 두었고, 각 향마다 1만 2,500호가 있다.
>
> 수사遂士에 대해 정현은 "수사는 여섯 수遂의 송사를 주관하였다."[55]라고 주를 달았다. 도성으로부터 100리에서 200리 사이의 지역을 수라 하며, 각 수마다 7만 5,000호가 있다.
>
> 현사縣士에 대해 정현은 "현사는 현의 송사를 주관하였다."[56]라

52) [저]《大司寇》序官云. "乃立秋官司寇, 使帅其属而掌邦禁, 而佐王刑邦国." 郑注. "禁, 所以防奸者也.刑, 正人之法."(손이양, 『주례정의』, 왕문금 · 진옥하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 1997, 2쪽 참조)

53) [저]《周礼》. "士", 郑注. "士, 察也, 主察狱讼之事者."(같은 책, 2711쪽 참조)

54) [저] 乡士, 郑注. "主六乡之狱."(같은 책, 2711쪽 참조)

55) [저] 遂士, 郑注. "遂士, 主六遂之狱者."(같은 책, 2712쪽 참조)

56) [저] 县士, 郑注. "县士, 主县之狱者."(같은 책, 2713쪽 참조)

고 주를 달았다. 도성으로부터 300리에서 400리 떨어진 곳을 현이라 한다.

도사都士에 대해 정현은 "도사는 지역의 관리와 백성 간의 송사를 주관하였다."[57]라고 주를 달았다. 네 개의 현이 모이면 하나의 도가 된다.

방사方士에 대해 정현은 "사방의 도가都家 지역의 송사를 주관하였다."[58]라고 주를 달았다.

그 외에도 각종 전문 사법 관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사형司刑'은 오형五刑을 관장하고, '사환司圜'은 감옥을 관장하며, '장수掌囚'는 사형수를 구금하는 일을 맡고, '장륙掌戮'은 처형을 관장하며, '사사士師'는 나라의 다섯 가지 금법禁法을 관장하였다. 법의 그물망이 정교하게 펼쳐져 있어, 나라 전역을 빈틈없이 뒤덮고 있었다.

셋째, 사회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오형을 설정하였다. '사형'은 오형을 관장하며, "묵죄墨罪 오백, 의죄劓罪 오백, 궁죄宮罪 오백, 월죄刖罪 오백, 살죄殺罪 오백"[59]이라 하여, 이는 모두 중죄인에게 적용되었다. 오형은 모두 육체에 해를 가하는 형벌로, 죄인을 위협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

'장륙'은 살해 형벌을 주관하였다. "친족을 살해한 자는 불살랐고, 왕의 친족을 살해한 자는 그 시체를 찢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시신을 저잣거리에 내걸고(踣諸市), 3일 동안 드러내며(肆三日), 도둑은 시장에서

57) [저] 都士, 郑注. "主治都家吏民之狱讼."(같은 책, 2739쪽 참조)

58) [저] 方士, 郑注. "主四方都家之狱者."(같은 책, 2714쪽 참조)

59) [역]《司刑》. "墨罪五百, 劓罪五百, 宫罪五百, 刖罪五百, 杀罪五百."

형을 집행한다."라고 하였다. 불사름(焚), 고형(辜), 내걸기(踣), 형벌(刑) 등의 방식은 공개 처형을 통해 경계 효과를 높이려 한 것이다. '사사'는 "오금지법五禁之法을 주관하여 형벌을 시행하는 데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첫째는 궁중 금령, 둘째는 관청 금령, 셋째는 도성 금령, 넷째는 야외 금령, 다섯째는 군영 금령이 있다." 이는 모두 백성을 경계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60]

넷째, 완전한 사법 운영 절차를 갖추고 있다. 전문적으로 설치된 사법 부서로서, '대사구'에 나타난 사법 운영 절차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높은 전문성을 보여준다.

심국審鞫과 정언定

사법 절차의 핵심으로, 하나는 사건을 신중히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확정하는 것으로, 억울한 판결을 방지하는 것이 중점이다. '향사', '수사', '현사', '방사' 등 각 직책마다 다음과 같은 동일한 문구가 있으며, 이는 사건 심리 절차와 요점을 명시한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기준이다:

> 그들의 소송 내용을 듣고, 진술을 살핀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구별하여,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따로 분리하고 그 핵심을 추려낸다. 열흘 뒤에 해당 관직 담당자가 조정에 보고한다. 사구司寇가 이를 청문하고, 소송을 단정하며, 그 사건의 시비를 단정한다. 모든 사관士官과 사형司刑관이 함께 참석하여, 각각 자신

60) [역]《掌戮》. "凡杀其亲者, 焚之; 杀王之亲者, 辜之.凡杀人者, 踣诸市, 肆之三日, 刑盗于市"; 《士师》. "掌国之五禁之法, 以左右刑罚: 一曰宫禁, 二曰官禁, 三曰国禁, 四曰野禁, 五曰军禁."

이 관장하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 함께 사건을 토론한다.[61]

정현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변辯과 이異는 문서를 구분하는 것이다. 요지要之는 죄와 법에 대한 요점을 적는 것으로, 오늘날의 탄핵서와 같다. 열흘 동안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자백을 번복할 여지를 주기 위함이다."[62] 향사는 소송을 들을 때 먼저 문서의 성격을 판별해야 한다. '옥獄'은 형사 사건, '송訟'은 경제 사건이므로, 이 둘은 문서 형식 자체가 다르므로 반드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쌍방의 진술을 세심히 심사하여,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 허위를 가려내고 사실을 따르며, 중요한 실질 진술을 확보하고, 반복 검증하여 억울하거나 남용된 판결을 막아야 한다. 또한 사형과 나머지 네 가지 형벌은 경중이 현저히 다르므로, 문서 역시 다르게 처리해야 하며, 반드시 다시 구분하여 죄를 확정해야 한다. 사건에 전환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즉각 판단하지 않고 열흘간 유예하도록 '냉각기간'을 두는데, 가공언은 "비록 사실을 얻어 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열흘이 지난 후에야 외조外朝에 넘겨 최종 판단을 구한다."[63]라고 했다. 피고가 과거에 허위로 죄를 인정했다가 이 시점에 마음을 바꿔 진술을 번복하려 한다면, 자백을 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열흘 안에 자백을 번복하지 않으면, 고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문서를 외조 관원에게 넘겨 재판을 진행

61) [역]《司寇》. "听其狱讼, 察其辞.辨其狱讼, 异其死刑之罪而要之, 旬而职听于朝.司寇听之, 断其狱、弊其讼于朝: 群士司刑皆在, 各丽其灋以议狱讼."

62) [저] 郑注. "辩、异, 谓殊其文书也.要之, 为其罪法之要辞, 如今劾矣.十日, 乃以职事治之于外朝, 容其自反复."(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913쪽 참조)

63) [저] 贾疏. "虽得要实之辞, 罪定, 仍至十日, 乃后亦断刑之职听断于外朝."(같은 책, 912쪽 참조)

한다. 최종적으로 사구司寇가 직접 사건 경과를 듣고, 각지의 형사 담당 관원들 또한 전원 참석하여 각자가 관장하는 법률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그 자리에서 함께 논의해 최종 판결을 확정하고, 판결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종결한 뒤, 사형 집행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날짜를 정해 처형한다.

삼자三刺·삼유三宥·삼사三赦

『주례』의 오형 중 사형死刑이 가장 중하며, 한 번 죽이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 살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철저히 심사하여 처형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사자司刺'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서민의 소송 가운데 사형을 적용할 때 세 번 심문을 관장한다. 첫 번째 심문은 뭇 신하들(群臣)에게, 두 번째는 관료(群吏)에게, 세 번째는 만민萬民에게 물어야 한다. 첫 번째 사면은 '몰랐던 경우', 두 번째는 '과실로 인한 경우', 세 번째는 '잊어버린 경우'로 한다. 첫 번째 용서 사유는 '어리고 약한 자', 두 번째는 '노쇠한 자', 세 번째는 '우매한 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통해 민심을 살피고, 백성 중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위와 아래가 모두 인정하는 죄목을 적용한 후에야 비로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64]

'刺사'란 곧 죽이는 것을 말한다. 三刺삼사는 세 가지 종류의 사형 사

64) [역]《司刺》云. "掌三刺断庶民狱讼之中.壹刺曰讯群臣, 再刺曰讯群吏, 三刺讯万民.壹宥曰不识, 再宥曰过失, 三宥曰遗忘.壹赦曰幼弱, 再赦曰老旄, 三赦曰蠢愚.以此三法者求民情, 断民中, 而施上服、下服之罪, 然后刑杀."

건을 가리킨다. 사람의 생사는 중대한 일인 만큼, 군신, 관료, 백성 모두에게 의견을 물은 뒤에 이견이 없고, 전국의 백성들 모두가 죽임에 동의해야만 죄를 확정할 수 있다. '宥유'는 관대히 용서함을 뜻한다. 三宥삼유는 '모름', '과실', '망각'으로 인해 사람을 잘못 죽인 경우, 사면할 수 있음을 뜻한다. '모름'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오늘날 원수 갑에게 복수하려다 을을 보고 진심으로 갑으로 착각하고 죽인 경우와 같다." '과실'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 예컨대 "칼을 들고 나무를 자르려다가 실수로 사람을 베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망각'은 앞의 장막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잊고, "무기나 화살을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65]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 모두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에 사정상 용서할 수 있으니, 이에 따라 관대히 처리할 수 있다. '赦사'는 관대한 사면이다. 三赦삼사는 '노쇠한 자', '어린 자', '우매한 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사형을 면제할 수 있음을 뜻한다. '노모老旄'란 여든 살 이상 고령으로 정신이 흐릿한 사람을 말한다. '유약幼弱'은 아직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가리킨다. '준우蠢愚'는 타고난 지능 저하를 뜻한다. 이 세 부류는 모두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질 수 없으므로, 사면할 수 있다. 가공언은 소에 "만약 이러한 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자가 생길까 염려된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사용함으로써, 백성에 대한 판결이 공정할 수 있다."[66]라고 했다. 『주례』의 사법적 유죄 확정에 있어 엄격함과 신중함은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가장 감탄할 만한 것은 '소사구'에 나오는 '오청五聽'이다. "다섯 가지

65) [저] 郑注. "若今仇雠当报甲, 见乙, 诚以为甲而杀之者."; "若举刃欲斫伐, 而轶中人者"; "而以兵矢投射之."(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930쪽 참조)

66) [저] 贾疏. "若不以此法, 恐有人滥者, 由用三法, 故断民得中."(같은 책, 2022, 930쪽 참조)

감각으로 송사를 청취하여 백성의 정상情狀을 구한다. 첫째는 언사言辭를 듣고, 둘째는 안색顔色을 보고, 셋째는 숨결(氣息)을 듣고, 넷째는 청각(耳聽)으로 구별하고, 다섯째는 눈빛(目光)을 본다." 정현은 주석하기를:

>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곧지 않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그의 안색을 보면, 정직하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진다. 그의 숨결을 살펴보면, 정직하지 않으면 숨이 가빠진다. 그의 듣는 자세를 보면, 정직하지 않으면 반응이 분명하지 않다. 그의 눈빛을 보면, 정직하지 않으면 눈동자가 흔들린다.[67]

사건 판결 이후에도,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말, 안색, 숨결, 눈빛 등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를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 만약 사건에 허위나 억울함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므로,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근거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는 이론은, 오늘날 말하는 범죄 심리학에 해당하며, 이는 지극히 지혜롭고 동시에 깊은 인애仁愛를 담고 있다. 『서경』, 「여형呂刑」에 나오는 "용모를 근거로 심문하라(惟貌有稽)."라는 표현도 이와 맥락이 같아서, 공영달은 주석에서 "〈이는〉 곧 『주례』의 오청이다."[68]라고 설명했다. 후대 주석가들 역시 이 두 문헌을 서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

67) [저]《小司寇》的"五听". "以五声听狱讼, 求民情: 一曰辞听, 二曰色听, 三曰气听, 四曰耳听, 五曰目听."郑注: 观其出言, 不直则烦.观其颜色, 不直则赧然.观其气息, 不直则喘.观其听聆, 不直则惑.观其牟子视, 不直则眊然."(손이양, 『주례정의』, 왕문금 · 진옥하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 1997, 2770~2771쪽 참조)

68) [저]《书•吕刑》. "惟貌有稽"与此如出一辙, 故孔疏云"即《周礼》五听."(공영달, 『상서주소』/『십삼경주소』 제1책, 타이베이: 예문인서관, 2011, 300~302쪽 참조)

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례』의 사법 체계는 행정부서 구성에서나 사법 절차의 운영에서든, 모두 이미 완전하고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3. "대사구" 관법官法의 차례와 사법司法 취지

앞서 논한 『주례』의 법치 제도는 비교적 표면적인 지표에 해당하며, 사상과 이념의 차원까지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없이, '대사구'는 그 사법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구이다. 그러나 『주례』의 체계는 차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직관을 배열한 것으로, 여섯 편 모두 그러하며, 마치 관례적인 문서와 같아 저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깊이 전개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필자는 '대사구'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의문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대사구'의 사법 이념을 탐구하는데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관」이 관할하는 육십 개 직관은 업무가 매우 번잡하여, 이를 읽어도 요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이치에 따르자면, '대사구'의 관법 서두에는 반드시 요점을 뽑아 본관의 핵심 임무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중요도와 급하고 급하지 않은 순서의 선후에 따라 나머지 사무를 서술해야 마땅하다. 대사구는 형벌을 주관하는 직책이므로, 관법의 첫머리에는 곧바로 묵형(墨), 의형(劓), 궁형(宮), 월형(刖), 살형(殺) 등의 "정오형正五刑"을 밝히고, 이어서 고발, 연좌, 형기 등 구체적 처벌 규정을 서술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 그러나 『주례』 '대사구'는 이와 완전히 반대의 배열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여섯 조

항에서 관법을 배열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방국을 세우는 세 가지 법을 주관하여, 왕을 도와 큰 나라(邦)와 작은 나라(國)를 형벌로 제재하고 사방을 다스린다. 첫째는, 새로 세워진 나라에는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안정된 나라에는 중간 정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어지러운 나라에는 무거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
> 오형五刑으로 만민을 규찰한다. 첫째, 야형野刑, 농사에 힘쓰는 자를 장려하고 농사에 힘쓰지 않는 자를 규찰한다. 둘째, 군형軍刑, 군중에서 쓰는 형벌로, 명령을 준수하는 자를 장려하고 직수職守를 잘못하는 자를 규찰한다. 셋째, 향형鄕刑, 덕이 있는 자를 장려하고 불효하는 자를 규찰한다. 넷째, 관형官刑, 어진 자를 장려하고 직무를 잘못 수행하는 자를 규찰한다. 다섯째, 국형國刑, 근신한 자를 장려하고 공손하지 못한 자를 규찰한다.
>
> 환토圜土를 통해 일하지 않는 백성을 모아 교화한다. 남을 해친 자는 모두 환토에 수감하여 일정한 업무를 맡기고, 죄를 밝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중 고칠 수 있는 자는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되, 3년 동안 나이와 신분에 따라 일반 백성과 같은 반열에 들 수 없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음에도 환토를 빠져나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
> 가석嘉石으로 태만한 백성(罷民)을 다스린다. 백성들 가운데 법에

는 걸리지 않으나 마을(州里)에 폐해를 끼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족쇄를 채워서 가석에 앉히고 사공司空의 관아에서 부역하게 하되, 죄가 무거운 자는 13일 앉힌 다음 1년을 부역시키고, 그 다음은 9일을 앉힌 다음 9개월을 부역시키고, 그 다음은 7일에 7개월을 부역시키고, 그 다음은 5일에 5개월을 부역시키고, 가장 가벼운 죄는 3일에 3개월을 부역시키며, 주와 리의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서야 용서하여 놓아준다.

송사의 양측 당사자들을 함께 법정에 이르게 하여 백성들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먼저 한 묶음의 화살(束矢)을 조정에 바친 후에야 송사를 다스렸다. 또한 양쪽 당사자가 증거문서를 각기 제출하게 하여 형사 고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금지한다. 반드시 균금鈞金을 3일 내에 들여놓아 조정에 이른 연후에 옥사를 다스렸다.

폐석肺石을 이용하여 가난하고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의 사정을 윗사람에게 전달한다. 멀고 가까운 곳의 고아·독거노인·노약자 등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윗사람에게 호소하려 해도 그들의 상급 관리가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그 백성들을 폐석 위에 올라 3일간 서 있도록 하며, 그런 뒤에 조정의 관리가 나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이를 왕에게 보고하고, 이를 가로막았던 그 상급 관리를 처벌한다.[69]

69) [역]《周礼•大司寇》. "掌建邦之三典, 以佐王刑邦国、诘四方: 一曰刑新国用轻典, 二曰刑平国用中典, 三曰刑乱国用重典.以五刑纠万民: 一曰野刑, 上功纠力; 二曰军刑, 上命纠守; 三曰乡刑, 上德纠孝; 四曰官刑, 上能纠职; 五曰国刑, 上愿纠暴.以圜土聚教罢民, 凡害

위에서 인용한 여섯 조항의 관법은 각각 방국邦國, 만민萬民, 파민罷民, 송사獄訟, 궁민窮民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뜻밖에도 "정오형"이 보이지 않는다. "정오형"이라는 명칭은 '소사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나는데,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오형으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함에, 형벌에 의존하되 사정과 인정을 함께 살펴 신문한다."[70]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형의 세부 조목은 한참 뒤인 '사형'편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데, "오형의 법을 주관하여 만민의 죄를 규명한다. 묵죄墨罪 오백, 의죄劓罪 오백, 궁죄宮罪 오백, 월죄刖罪 오백, 살죄殺罪 오백"[71]이라 하였다. 이러한 배열은 분명 「추관」 내에서 다섯 가지 육형肉刑의 비중을 일부러 낮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조항은 "오형으로 만민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오형"은 "정오형"이 아니라 야野, 군軍, 향鄕, 관官, 국國에서 백성의 행정을 다스리기 위한 법을 각각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형刑은 곧 법法이다. 규糾는 다른 점을 살핀다는 뜻이다." 가공언은 "이 오형은 일반적인 정오형인 묵형, 의형 등과는 다르다."[72]라고 밝혔다. 이 오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공규

人者, 置之圜土而施职事焉, 以明刑耻之.其能改者, 反于中国, 不齿三年.其不能改而出圜土者, 杀.以嘉石平罢民, 凡万民之有罪过而未丽于灋而害于州里者, 桎梏而坐诸嘉石, 役诸司空: 重罪, 旬有三日坐, 期役; 其次九日坐, 九月役; 其次七日坐, 七月役; 其次五日坐, 五月役; 其下罪三日坐, 三月役; 使州里任之, 则宥而舍之.以两造禁民讼, 入束矢于朝, 然后听之.以两剂禁民狱, 入钧金, 三日乃致于朝, 然后听之.以肺石达穷民, 凡远近茕独老幼之欲有复于上而其长弗达者, 立于肺石三日, 士听其辞, 以告于上而罪其长."

70) [역]《小司寇》. "以五刑听万民之狱讼, 附于刑, 用情讯之."

71) [역]《司刑》. "掌五刑之法, 以丽万民之罪, 墨罪五百, 劓罪五百, 宫罪五百, 刖罪五百, 杀罪五百."

72) [저] "以五刑纠万民", 郑注. "刑亦法也.纠犹察异之." 贾疏. "此五刑, 与寻常正五刑墨、劓之等别."(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892쪽 참조)

력上功糾力", 정현 주. "공功은 농업의 공로이고, 력力은 부지런히 힘쓰는 것이다." 즉, 들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에 힘쓰도록 독려한다는 뜻이다. "상명규수上命糾守", 정현 주. "명命은 장수의 명령이고, 수守는 부대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군대에 복무하는 자로 하여금 장수의 명령을 따르고, 부대를 이탈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상덕규효上德糾孝", 정현 주. "덕德이란 육덕六德이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孝다." '대사도'에 따르면, 육덕이란 지知, 인仁, 성聖, 의義, 충忠, 화和로서, 육향六鄕에서 교화하는 덕목이다. "상능규직上能糾職", 정현 주. "능能은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직職은 직책을 정돈하는 것이다." 즉, 관리들로 하여금 직책에 충성을 다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상원규폭上愿糾暴", 정현 주. "원愿은 진실하고 신중함을 뜻하며, 폭暴은 공恭자의 오자이다."[73] 정현은 왜 "폭暴"을 "공恭"으로 고쳤을까? 가공언의 소에서는 "앞의 네 가지 형벌은 모두 선한 점을 단속하는 것으로, 악한 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미루어 보아 공恭이 옳다."[74]라고 설명하였다. 이로 보아, 이 오형의 대의는 들, 향, 국가, 관부, 군대 등 모든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는 선행을 장려하는 법으로, 결코 형벌로 억누르는 법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서경』, 「여형」에서 말하는 교화 중심의 통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형」에 따르면, 요堯임금이 삼묘三苗를 주벌한 뒤 백성의 도덕 수준을 높이고, 생존 환경과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 안정을 이루는 기초로 삼았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요임금은 "백이伯夷에게 예법을

---

73) [저] "上功纠力", 郑注. "功, 农功.力, 勤力."; "上命纠守", 郑注. "命, 将命也.守, 不失部伍."; "上德纠孝", 郑注. "德, 六德也.善父母为孝."; "上能纠职", 郑注. "能, 能其事也.职, 职事修理."; "上愿纠暴", 郑注. "愿, 悫慎也.暴, 当为恭字之误也."(같은 책, 892쪽 참조)

74) [역] "以上四刑, 皆纠察其善, 不纠其恶, 以类言之, 故知是恭."

내려 백성을 예의로 교화하게 하고, 우禹에게 수토水土를 다스리게 하여 산천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며, 직稷에게 파종하는 법을 내려 아름다운 곡식을 재배하게 하였다."[75]라고 한다. 그 다음에서야 "사관들이 백성을 형벌로 제어하면서, 덕을 공경하도록 가르쳤다."[76] 요임금의 정치 이념은 먼저 예禮로 이끌고, 뒤에 형刑을 쓰며, 예로써 교화하여 예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가해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형과 예가 서로 보완되어 다스림을 이루니, 이는 마치 솥 밑 장작을 제거하는 방법과 같고, 이는 겉으로만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대사구'에서 사회 교화적 "오형"을 중요한 위치에 둔 것은 바로 「여형」과 일치한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항의 관법이다. 이는 "파민罷民(농사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게으른 백성)"과 "타인을 해친자(害人者, 과실로 하여 법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삼되, 이들을 죽음으로 위협하지 않고 먼저 교화를 우선시한다. 그들을 '환토圜土, 감옥'에 수용하여 "괴롭게 하여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이다. 즉 자유를 박탈하고 고된 나날을 보내게 하여 스스로를 한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노역을 시키는데, 이는 오늘날 중국에서의 "노동교양勞動教養" 과 유사하다. 그들의 수오지심을 일깨우기 위해 "형벌과 수치심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그 죄악을 커다란 나무판에 적어 등에 부착하게 한다."[77] 이는 수치를 느끼게 하여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

75) [저]《吕刑》. "伯夷降典, 折民惟刑.禹平水土, 主名山川.稷降播种, 农殖嘉谷."(공영달, 『상서주소』/『십삼경주소』 제1책, 타이베이: 예문인서관, 2011, 298쪽 참조)

76) [저] "士制百姓于刑之中, 以教祇德."(같은 책, 298쪽 참조)

77) [저] "以明刑耻之", "书其罪恶于大方版, 着其背."(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893쪽 참조)

잘못을 뉘우친 자는 "중국中國(중심 지역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으나, 평민들과 동등하게 나이순으로 자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3년 동안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뉘우칠 줄 모르고 환토에서 탈출하는 자에 대해서만 죽였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해 아직 법에 직접 저촉되지 않았으나, 주리州里(지역 공동체)에 해를 끼친 경우, 이들은 "족쇄를 채워서 가석에 앉히고, 사공司空에게 보내어 부역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가석은 무늬가 있는 돌로, 외조外朝 문 왼편에 세워져 있으며, '평平'은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그를 올바르게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가공언의 소에서는 "교화를 안 따르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무늬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스스로 고치게 하려는 것이다."[78]라고 설명한다. 가석은 고문庫門 밖, 외조 왼편에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를 그곳에 앉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일부는 일정 시간 동안 족쇄를 채운 채 가석 위에 앉혀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신적 처벌이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사공의 지휘하에 노역을 수행하는 신체적 처벌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 처벌된다. 죄가 무거운 자는 13일 앉힌 다음 1년을 부역시키고, 그 다음은 9일을 앉힌 다음 9개월을 부역시키고, 그 다음은 7일 앉힌 다음 7개월을 부역시키고, 그 다음은 5일을 앉힌 다음 5개월을 부역시키고, 가장 가벼운 죄는 3일 앉힌 다음 3개월을 부역시킨다. 노역 기간을 마친 자는 그의 고향 지역의 주장이나 이재里宰(촌장 격)가 나서서 보증하면, 관대히 용서하고 석방해 준다. "명형明刑"은 대사구의 형벌 사

78) [저] "桎梏而坐诸嘉石, 役诸司空", 郑注. "嘉石, 文石也.树之外朝门左.平, 成也.成之使善." 贾疏. "欲使罢民思其纹理, 以改悔自修."(같은 책, 894쪽 참조)

상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감금이나 가석에 앉히는 등의 수단을 통해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명예형名譽刑"이라 할 수 있다. 주된 목적은 죄인을 반성하게 하고, 가급적 육체적 처벌을 피하는 데 있다.

다섯 번째 조항에서는, 정부가 아무 일도 없이 소송을 일으키거나, 무고하고 모함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속시束矢와 균금鈞金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자의 비용 부담을 늘려, 정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다.

"양쪽 소송 당사자가 함께 법정에 이르게 하여 백성들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정현은 다음과 같이 주를 남겼다. "송訟이란 재화財貨를 사용하여 서로 고소하는 것을 말한다. 조造는 이르는 것이다. 소송 당사자 양쪽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각각 한 묶음의 화살(束矢)을 조정에 바친 후에야 송사를 다스렸다. 출석하지 않거나 화살을 바치지 않으면 이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가공언은 소에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한 묶음의 화살을 바치게 하여, 사실이 아니면 관부에서 몰수한다는 뜻이다. 바치지 않으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백성의 소송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한다.[79] 고대에는 활 한 자루에 백 개의 화살을 맞췄는데, 한 묶음의 화살은 아마 백 개의 화살을 의미했을 것이다. 소송하는 자는 이미 정부의 사법 자원을 사용한 셈이므로 한 묶음의 화살을 비용으로 납부해야 하고, 만약 패소할 경우 해당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데, 이는 이치에 맞다. 이렇게 하면 승소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송사를 주저

79) [역]《秋官司寇》. "以两造禁民讼", 郑注. "讼, 谓以财货相告者.造, 至也.使讼者两至, 既两至, 使入束矢乃治之也.不至, 不入束矢, 则是自服不直者也."贾疏. "言禁者, 谓先令入束矢, 不实则没入官.若不入, 则是自服不直, 是禁民省事之法也."

하게 된다.

"양쪽 당사자가 증거문서를 각기 제출하게 하여 형사 고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금지한다." 여기서 '옥獄'은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고소하는 것을 말하며, '제劑'는 증거문서, '균鈞'은 서른 근을 의미한다. 정현의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증거 문서를 소지하고, 양측 모두 증거 문서를 제출한 다음, 삼십 근의 금속 화폐를 내야하며, 접수된 이후 또 3일을 지나야 비로소 재판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형벌임에도, 증거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속 화폐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정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80] 형사 고소(民獄)는 민사 소송(民訟)보다 엄중하기 때문에, 죄를 서로 고발하는 양측에게 각각 증거 문서를 지참하게 하고, 삼십 근의 동을 소송비용으로 납부하게 한다. 그리고 삼 일이 지나서야 조정에 나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가장 마지막의 관법 조항 또한 뜻밖에도 사회적 약자인 궁민窮民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현은 "하늘 아래 백성 중에서 궁하여 하소연할 데 없는 자이다. 형제가 없는 이를 '경惸'이라 하고, 자손이 없는 이를 '독獨'이라 한다."[81]라고 풀이하였다. 이처럼 의지할 곳 없이 생계가 어려운 궁민은 사회로부터 가장 쉽게 잊히거나 무시당하기 쉽다. 궁민이 "왕과 육경六卿에게 상소하고자 할 때, 그 장長(제후나 향수대부)이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82] 폐석 위에 서게 한다. 이때 "사士(사법 관원)"는 반드시 3일 이내에 나아가 그의 진술을 듣고,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

80) [역]《秋官司寇》. "以两剂禁民狱", 郑注. "使狱者各赍券书, 既两券书, 使入钧金, 又三日乃治之, 重刑也.不券书, 不入金, 则是亦自服不直者也."

81) [저] 郑注. "天民之穷而无告者.无兄弟曰惸.无子孙曰独."(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895쪽 참조)

82) [역]《秋官司寇》. "欲有复于上(王与六卿)而其长(诸侯或乡遂大夫)弗达者."

실로 판명되면, 백성의 여론과 호소가 윗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억압한 제후나 향수의 관리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폐석은 궁민의 뜻을 호소하고 억울함과 바람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된 지정된 장소였으며, 이를 전담하는 관리를 따로 두었다는 점에서, 약자 계층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억울함을 풀 기회를 제공한 매우 진보적인 사법 제도라 할 수 있다.

덕德을 다스림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바로 유가儒家 사상의 구현이다. 「강고康誥」에서는 "크게 악한 자는 크게 미움을 받는 법"[83]의 죄를,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으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그 아들을 미워하며, 아우는 하늘의 밝은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형을 공경하지 않으며, 형 또한 아우의 애처로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는 것"[84]에 돌렸다. 이를 "백성의 도리(民彝)가 크게 문란해진 근원"[85]으로 보았으며, "속히 문왕이 정한 벌을 시행하여 형벌에 처하고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86]라고 하였다. 공안국은 전傳에서 "문왕이 지은 교훈을 어긴 자에게 실시하는 벌을 속히 시행하여, 이 오상五常을 어지럽힌 자를 형벌에 처하고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87]로 해석하였다.

요컨대, 『주례』의 저자는 '대사구'의 여섯 조항의 관법을 배열하며 은연중에 자신의 사법 이념을 표현했으며, 이는 주공 이래의 "덕형" 사상

83) [역]《康诰》. "元恶大憝."

84) [역]《康诰》. "不孝不友, 子弗祇服厥父事, 大伤厥考心.于父不能字厥子, 乃疾厥子.于弟弗念天显, 乃弗克恭厥兄.兄亦不念鞠子哀, 大不友于弟."

85) [역]《康诰》. "民彝大泯乱."

86) [역]《康诰》. "速由文王作罚, 刑兹无赦."

87) [역] "速用文王所作违教之罚, 刑此乱五常者无得赦."

에 뿌리를 둔 것이다. 『상서』에 수록된 주周 초의 여러 고문誥文에서는 반복적으로 덕을 숭상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한다. 예컨대, 「강고」에는 "너희의 위대한 선조이신 문왕은 능히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히 하였으며,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았다."[88] 라고 하였다. 여기서 "克극"은 '능하다'는 뜻이다. 「군석君奭」에는 "이것은 오래된 교육을 따르는 것이며, 문왕은 덕을 힘써 닦아 백성에게 내렸다."[89]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교彝教"는 백성을 위한 상시적 교육을 뜻하고, 아름다운 덕(懿德)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멸蔑"은 '힘쓰다'라는 뜻으로 문왕이 "아름다운 덕(懿德)"을 힘써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의미다. 또한 「강고」에서는 "의로운 형벌과 의로운 살벌(義刑義殺)"이라는 개념도 제시되며, 범죄자라도 그 동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죽여서는 안 되며(不可殺)", 상습적인 범죄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不可不殺)."라고 하였다. 판결은 신중해야 하며 "대여섯 날 동안 깊이 숙려하고, 열흘 이상 치밀히 살펴야 하며, 죄인을 철저히 심문할 것"[90]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대사구'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4, "대사구" 중 형벌과 무관한 열두 속관屬官

'대사구'에서 또 하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점은, 속관 중에 나타난 관직들—명씨冥氏, 서씨庶氏, 혈씨穴氏, 기씨冀氏, 작씨柞氏, 치씨薙氏, 철

88) [역]《康诰》. "惟乃丕显考文王克明德慎罚, 不敢侮矜寡."
89) [역]《君奭》. "兹迪彝教, 文王蔑德, 降于国人."
90) [역]《康诰》. "服念五六日, 至于旬时, 丕蔽要囚."

촉씨哲蔟氏, 전씨翦氏, 적발씨赤犮氏, 괵씨蟈氏, 호탁씨壺涿氏, 정씨庭氏—이 모두 형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주례』에서 사법을 전담하는 부서인 '대사구'의 관직이라면, 특정한 사법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나, 이 열두 관직은 사법과 전혀 무관하니,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직무를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명씨冥氏. "활 모양의 그물을 설치하여 함정으로 사나운 짐승을 잡고, 영고靈鼓를 쳐서 몰아넣는 일을 맡는다." 정현 주: 명冥이란 "끈으로 새나 짐승을 잡는 명칭이다."[91] "호장弧張은 동罿이나 부罦 같은 것으로, 새나 짐승을 가두기 위한 장비다."[92] 『시경』, 「왕풍王風·토원兔爰」에는 "꿩이 부罦에 걸렸다.", "꿩이 동罿에 걸렸다."[93]라는 구절이 있다. 부罦는 새나 짐승을 자동으로 잡을 수 있는 장치로, 속칭 복거망覆車網이라 하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동罿은 부罦와 같은 뜻이다. 명씨는 여섯 면으로 된 영고靈鼓를 쳐서 새와 짐승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일을 맡았다.

서씨庶氏. "독고毒蠱를 제거하는 일을 맡으며, 제사를 지내어 신에게 기원하거나, 가초嘉草라는 약초를 사용해 이를 훈증하여 없앤다." "독고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벌레를 말하고", "공설攻說은 신에게 기원하여 퇴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禬는 종기(瘇癰) 터질 궤潰와 같이 읽는다."[94] 가초嘉草는 약초 이름이다. 공攻은 가초를 태워 훈증하는 방법을

---

91) [저] 冥氏. "掌设弧张, 为阱擭以攻猛兽, 以灵鼓驱之." 郑注: 冥乃"以绳縻取禽兽之名."(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905쪽 참조)

92) [저] "弧张, 罿、罦之属, 所以扃绢禽兽."(같은 책, 978쪽 참조)

93) [역]《诗•王风•兔爰》. "雉罹于罦", "雉罹于罿."

94) [저] 庶氏. "掌除毒蠱,以攻说禬之,嘉草攻之.", "毒蛊, 虫物而病害人者", "攻说, 祈名, 祈其神求去之也", "禬读如溃痈之溃"(가공언, 『주례소』, 펑린 점교/『유장』 제37 · 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 2022, 979쪽 참조)

가리킨다.

혈씨穴氏. "칩수蟄獸 사냥을 맡아, 각각 그 먹는 물건으로써 불사른다." 정현 주. "칩수는 곰과 불곰 같은 겨울에 숨는 짐승들이다. 그것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먹는 물건을 밖에서 불살라 유인하여 나오게 한 뒤에야 잡을 수 있다."[95] 여기서 알 수 있는바, 혈씨가 사냥하는 대상은 겨울에 굴속에서 동면하는 곰과 불곰(羆)이다.

기씨翨氏. "맹조猛鳥를 공격함을 맡아, 각각 그 먹는 물건을 미끼로 삼아 그것을 잡는다." 정현 주. "맹조는 매와 매 종류를 말한다. 그들이 먹는 물건을 비단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새가 내려오면 그 발을 잡는다."[96] "'각각 그 먹는 물건을 미끼로 삼는다'는 것은, 지금 매나 독수리를 잡을 때 비둘기를 그물 아래 두어 유인하는 것과 같다."

작씨柞氏. "초목과 수풀 및 산기슭의 숲을 정리하는 일을 맡는다." 가공언의 소. "작씨와 치씨薙氏는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맡는데, 모두 훗날 농사를 짓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다. 치씨는 주로 잡초를 제거하고, 작씨는 나무를 정리하는데, '초草'를 겸하여 말한 것은, 나무를 베는 곳에 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제거함을 뜻한다. "'림林은 사람이 기르는 것'이라 하였는데, 삼림의 경우 반드시 사람이 기른 것은 아닐 수 있다. 여기서는 사람이 직접 개간하고 다스려, 씨앗을 심으려는 것을 말하므로, 이 숲과 산기슭은 사람이 가꾸고 다스린 곳임을 알 수 있다. 옻나무 숲(漆林)에 대한 조세를 말한 경우도 이와 같은 부류이다."[97]

---

95) [저] 穴氏. "掌攻蟄兽, 各以其物火之." 郑注. "蟄兽, 熊罴之属冬藏者也.将攻之, 必先烧其所食之物於其外以诱出之, 乃可得之."(같은 책, 979쪽 참조)

96) [저] 翨氏. "掌攻猛鸟,各以其物为媒而掎之." 郑注. "猛鸟, 鹰隼之属.置其所食之物於绢中, 鸟来下则掎其脚."(같은 책, 980쪽 참조)

97) [저] 柞氏. "掌攻草木及林麓." 贾疏. "此柞氏与薙氏治地, 皆拟后年乃种田.但下有薙氏除草, 此柞氏攻木, 兼云草者, 以攻木之处有草, 兼攻之, 故云草也.云'林, 人所养者', 若林衡

치씨薙氏. "풀 제거를 맡는다. 봄에는 싹틀 때 베고, 하짓날에는 평탄하게 하고, 가을에는 줄기를 따라 베고, 동짓날에는 쟁기(耜)로 간다." 정현 주. "현玄이 '싹틀 때 벤다'는 것은, 이때 그 자라는 것을 찍어 자른다는 뜻이다.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낫으로 땅에 바짝 붙여 베는 것이니, 지금 칡을 캐는 것과 같다. 열매를 머금은 것을 '줄기(繩)'라 하며, 그 줄기를 베면 열매가 익지 못한다. '간다'는 것은 쟁기로 언 땅을 긁어 없앤다는 뜻이다."[98]

철촉씨哲蔟氏. "요조夭鳥의 둥지를 허무는 일을 맡으니, 이는 악한 것을 제거하는 일이다." 정현 주. "복覆은 '허문다'는 뜻이고, 요조夭鳥는 흉조로 여겨지는 울음소리를 내는 새로, 예컨대 부엉이(鴞)나 올빼미(鵬) 등과 같다."[99] 이 관직은 요조夭鳥의 둥지를 파괴하는 일을 담당한다. 부엉이(鴞)와 올빼미(鵬)는 특히 밤에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한다.

전씨翦氏. "기물을 갉아먹는 해충을 제거하는 일을 맡는다. 정영攻禜으로 공격하고, 망초莽草로 훈증하여 죽인다. 모든 해충 제거 업무를 담당한다." 정현 주. "두물蠹物이란 사람의 기물과 용구를 갉아먹는 것이며, 벌레와 물고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공영攻禜은 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다. 망초는 해충을 죽이는 약초로, 태워서 훈증하면 해충이 죽는다."[100]

所掌者, 未必人所养, 此乃人所攻治, 以拟种殖, 故知此林麓人所养治者也.漆林之征, 亦此类也."(같은 책, 980쪽 참조)

98) [저] 薙氏. "掌杀草.春始生而萌之, 夏日至而夷之, 秋绳而芟之, 冬日至而耜之." 郑注. "玄谓萌之者, 以兹其斫其生者.夷之以钩镰迫地芟之也, 若今取茭矣.含实曰绳.芟其绳则实不成孰.耜之, 以耜测冻土划之."(같은 책, 981쪽 참조)

99) [저] 哲蔟氏. "掌覆夭鸟之巢, 是除恶之类." 郑注. "覆犹毁也.夭鸟, 恶鸣之鸟, 若鸮鵂."(같은 책, 981쪽 참조)

100) [저] 翦氏. "掌除蠹物, 以政禜攻之, 以莽草熏之, 凡庶蠹之事." 郑注. "蠹物, 穿食人器物

적발씨赤犮氏. "담장과 집안의 해충을 제거하는 일을 맡는다. 큰 조개(蜃)의 숯을 이용해 쫓아내고, 재로 뿌려 독살한다. 모든 틈새 있는 집에서 살쾡이와 벌레를 제거한다."라는 것, "'담장과 집안의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속에 숨어들어 도망치는 벌레와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蜃'은 큰 조개를 뜻하며, 이를 숯으로 만들어 뿌리면 해충이 달아나고, 두텁게 뿌려 덮으면 죽게 된다."[101]

괵씨蟈氏. "개구리(黽)와 맹꽁이(黾)를 제거하는 일을 맡는다. 모국牡鞠을 태우고, 그 재를 뿌리면 죽는다." 정현 주. "모국牡鞠은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이다. 제齊와 노魯 지방에서는 개구리를 와黽라 부르며, 맹꽁이를 맹黾이라 부른다. 와와 맹은 특히 시끄럽게 울어 사람의 귀를 괴롭게 하므로 제거하는 것이다."[102]

호탁씨壺涿氏. "물속 벌레를 제거하는 일을 맡는다. 포토炮土로 만든 북을 쳐서 쫓아내고, 불로 달군 돌을 던져 몰아낸다." 정현 주. "수충水蟲이란 호狐와 역蜮 종류를 말한다." "현玄은 말하기를 포토란 '불사름'의 포炮이며, 포토북은 기와로 만든 북이다. 불에 달군 돌을 던져 그것들이 놀라 달아나게 한다."[103]

정씨庭氏. "요조夭鳥를 쏘아 제거하는 것을 맡으며, 나라 안을 뜰처럼 깨끗하고 맑게 한다." 정현 주. "보이지 않는 새나 짐승으로, 밤에 와서 울부짖으며 괴이한 기운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104]

者, 虫鱼亦是也.攻禁, 祈名.莽草, 药物杀虫者, 以熏之则死."(같은 책, 982쪽 참조)

101) [저] 赤犮氏. "掌除墙屋, 以蜃炭攻之, 以灰洒毒之.凡隙屋, 除其貍蟲.", "除墙屋者, 除虫豸藏逃其中者.蜃, 大蛤也.捣其炭以坋之则走, 淳之以洒之则死."(같은 책, 982쪽 참조)

102) [저] 蟈氏. "掌去黿黾, 焚牡鞠, 以灰洒之则死." 郑注. "牡鞠, 鞠不华者.齐鲁之间谓黿为蝈.黾, 耿黾也.蝈与耿黾尤怒鸣, 为聒人耳去之."(같은 책, 983쪽 참조)

103) [저] 壶涿氏. "掌除水蟲, 以炮土之鼓敲之, 以焚石投之." 郑注. "水虫, 狐蜮之属.", "玄谓燔之炮之炮, 炮土之鼓, 瓦鼓也.焚石投之, 使惊去."(같은 책, 983쪽 참조)

104) [저] 庭氏. "掌射夭鸟, 令国中洁清如庭者." 郑注. "不见鸟兽, 谓夜来鸣呼为怪者."(같은

이상 열두 직책은 사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곳'대사구'"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정현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깊이 감추었다. 가공언은 소에서 이 열두 관직의 서관序官을 통해 하나하나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명씨'는 "금지하는 것과 지키는 일"[105]을 맡고, '서씨'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맡으며, '혈씨'는 "사나운 짐승을 제거하는 일"을 맡았다. '기씨'·'작씨'·'치씨'·'철촉씨'·'적발씨'·'괵씨'·'호탁씨'·'정씨' 모두 "악을 제거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유독 '전씨'만이 "기물을 해치는 벌레를 제거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이곳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이들 모두 악을 제거하는 역할이므로 「추관」으로 분류된 것이다. 손이양은 '명씨' 서관의 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명씨로부터 정씨에 이르기까지 열두 직책은 모두 새, 짐승, 벌레, 독충, 풀, 나무를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니, 이들 역시 살벌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모두 사구에 속하는 것이다."[106] 손이양는 이 열두 직책이 맡은 일이 모두 살벌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가을철의 숙살肅殺한 기운에 부합하므로 이들이 「추관」에 편입된 것이라 본다.

두 유학자의 말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열두 직책 중 명씨는 사나운 짐승을 공격하고, 혈씨는 겨울잠 자는 짐승을 공격하고, 기씨는 맹조를 공격하지만, 나머지 아홉 직책은 벌레나 풀, 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서씨는 가초嘉草로 독충을 퇴치하고, 전씨는 망초로 물건을 갉아먹는 해충을 훈증하여 죽이며, 적발씨는 큰 조개의 숯으로 벽 틈의 살쾡이와 해

책, 984쪽 참조)

105) [저]《冥氏》. "是禁守之事."(같은 책, 905쪽 참조)

106) [저] 孙诒让《冥氏》序官疏云. "冥氏者以下至庭氏十二职, 并掌攻除鸟兽蟲蛊及草木之官, 以其亦是杀伐之事, 故并属司寇."(손이양, 『주례정의』, 왕문금 · 진옥하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 1997, 2725쪽 참조)

충을 제거하고, 호탁씨는 물속 벌레를 쫓는다. 작씨는 풀과 나무, 숲을 정리하고, 치씨는 풀을 베며, 괵씨는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를 제거할 따름이다. 철촉씨와 정씨는 요조夭鳥를 쏘지만, 단지 그 울음소리가 싫기 때문이며, 호탁씨는 물벌레를 쫓기만 할 뿐 죽이지 않으며, 서씨의 독충 제거도 신에게 기원하는 방식이기에 살벌한 기운은 없다. 둘째, '대사구'의 성격은 대체로 오늘날의 민법전과 유사하여, 그 내용은 인사 소송이나 형법 규정을 다루어야 하는데, 명씨 등 열두 직책은 이와 무관하다. 이들을 '대사구'에 귀속시키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쥐, 참새, 모기, 파리를 제거하는 일"을 사법부에 맡긴 격이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일은 여전히 주나라 사람들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주나라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도(治道)는 극히 치밀하여, 도덕과 형벌에 앞서 민생을 먼저 고려하였다. 「여형」에서는 "이에 삼후三後에게 명하여, 백성의 생업을 돌보게 하였다."[107]라고 말한다. 백이伯夷, 우禹, 직稷 세 사람이 "백성의 생업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우가 홍수를 다스리고 산천의 이름을 붙인 것과, 직이 씨를 뿌리고, 힘써 좋은 곡식을 파종하게 한 것을 포함한다. 이 세 임금은 각기 큰 공을 이루어, 백성들의 생업이 풍족해지고 의식衣食이 넉넉해졌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민생을 우선시하고 중시한 결과, 서주西周에 이르러 수토水土는 정비되고 산천에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에 이 열두 관직을 두어 맹금, 칩수, 벌레와 독충, 개구리와 맹꽁이는 물론, 담장 틈의 살쾡이, 숲과 산기슭의 잡초까지도 제거하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게 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107) [역]《吕刑》. "乃命三后, 恤功于民."

삼후가 백성의 생업을 돌본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오직 이와 같이 해석해야만 경문의 의미와 완전히 통한다.

5. 확장 논의: 법灤과 "연성법(軟法)", 형刑과 덕형德刑

『주례』라는 책의 성립 연대 문제는 수천 년 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은 학술적 난제이다. 본고는 이 난제의 해명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법灤과 형刑이다.

『주례』의 주제는 "관제와 정치법규(官政之法)"인데, 관제적 관점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문헌은 많지 않다. 서주 초기는 모든 제도가 막 시작된 시기로, 정부 기구는 단순하였고 통치 또한 대체로 허술했다. 『서경』, 「입정立政」에서는 문왕과 무왕이 우禹와 탕湯을 본받아 관직을 설치했다고 하였는데, 이때 임인任人, 준부准夫, 목牧, 호분虎賁, 추의縋衣, 취마趣馬, 소윤小尹, 태사太史, 윤백尹伯, 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 아려亞旅 등 열댓 가지 직책만을 두어, 이들 사이에는 정밀한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춘추시대 열국의 경卿도 대개 여섯 명을 넘지 않았으며, 출정하면 장將으로, 조정에 들어오면 상相이 되었으니, 문무文武의 구분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다.

『순자荀子』, 「왕제王制」에서 언급된 직관이 점차 많아지고 분업도 비교적 명확해져, 「입정立政」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에 열거된 관직 또한 여전히 스무 개에 미치지 못한다. 『주례』와 대략적인 비교를 위해, 관련 구절을 옮겨 싣는다.

관직을 배정하는 법:

재작宰爵은 빈객의 접대와 제사 및 연회 때 쓰는 희생의 수량을 파악하는 일을 주관한다. 사도司徒는 많은 종족의 호적과 성곽 설비기구의 수량을 파악하는 일을 주관한다. 사마司馬는 군대, 갑옷과 무기, 전차와 병사의 수량을 파악하는 일을 주관한다. 헌명憲命을 정비하고, 시詩와 악장樂章을 살펴보며, 음란한 음악을 금지하는 한편, 야만스러운 풍속과 사악한 소리가 바른 음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태사大師의 임무였다. 제방과 교량을 수리하고, 도랑과 하수를 통하게 하며, 고인 물을 흘려보내고,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때에 따라 둑을 열거나 막아 가뭄과 수해에도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공司空의 직무였다. 지형의 높낮이를 살피고, 토질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헤아려, 다섯 가지 곡물의 재배를 배정하고, 농부들의 권태를 점검하며, 비축을 신중히 하여 시기에 맞춰 농사일을 정비하여 농민들이 꾸준히 힘써 일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치전治田의 직무이다. 불을 놓는 것과 관련된 규정(火憲)을 제정하고, 산림·늪지·초목·어류·패류 및 각종 산물을 양육하며, 시기에 따라 채취를 금지하거나 개방함으로써, 국가가 자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재물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사虞師의 직무이다. 주리州里를 순조롭게 다스리고, 전廛과 택宅을 배정하며, 가축을 사육하고, 심는 일을 익히게 하며, 교화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효제孝悌를 장려하여 시기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고 그 고을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향사鄕師의 직무이다. 각 장인들의 기예를 평가하고, 시의적절한 업무를 살피며, 강약을 변별하고, 견고함과 편리성을 제고하여, 준비하여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하며, 조각과 문양을 사사로이 민간에서 독점하여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사工師의 직무이다. 음양陰陽의 변화를 살피고, 기운과 징조를 점치며, 거북등껍질을 태워 점괘를 구하고, 다섯 가지 점복을 분석하는 일을 주관하여, 길흉吉凶과 요상妖祥을 알아내는 것은, 곱사등 무당과 절름발이 박수(覡)의 직무이다. 변소를 정비하고, 도로를 수리하며, 도둑과 도적을 단속하며, 무역 채권에 관한 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시기에 맞추어 순조롭게 처리하여, 겨쳐 가는 빈객과 나그네가 편안하고 재물이 원활히 통하게 하는 것이 치시治市의 직무이다. 급한 분쟁을 판결하고 난폭한 자를 금지하며, 음란한 것을 방지하고 사악함을 물리쳐, 오형五刑으로 처벌함으로써, 포악하고 사나운 자들을 변화시키고 간악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사구司寇의 직무이다. 정치와 교화를 근본으로 삼고, 법률과 준칙을 바르게 하며, 널리 듣고 수시로 점검하여 적어서, 그 공로를 평가하고, 상벌을 논하여, 시기에 맞게 신중히 정비함으로써, 모든 관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이 총재冢宰의 직무이다. 예禮와 악樂을 논하고,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며, 교화를 널리 시행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며, 이를 아우르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 벽공辟公(재상)의 직무이다. 도와 덕을 온전히 보전하고, 그 숭고함을 높이고, 문리文理(문화와 이치)를 치밀하게 하여,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진

흥시켜, 천하 모든 백성이 기꺼이 따르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천왕天王의 직무이다.[108]

의심할 여지없이, 「왕제」에서의 총재, 사도, 사마, 사구, 사공의 직무 구분은 『주례』와 대체로 대응된다. 또한 향사, 우사, 태사가 맡은 일도 『주례』의 향대부鄕大夫, 산우山虞, 택우澤虞, 태사大師, 소사小師와 유사하다. 그러나 「왕제」의 체계는 『주례』와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주례』의 육관六官 체제는 우선 행정 부서를 여섯 개 대분류로 나누었고, 각 부서마다 60개의 관직이 배속되어 있어, 그 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또한, 육관의 구조는 자연을 본받아 음양오행을 포괄하기에,[109] 정밀하고 화려하여 「왕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본고는 『주례』에 나타난 법灋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나의 "법灋" 체

108) [저] 序官. "宰爵知宾客、祭祀、飨食、牺牲、之牢数.司徒知百宗、城郭、立器之数.司马知师旅、甲兵、乘白之数.修宪命, 审诗商, 禁淫声, 以时顺修, 使夷俗邪音不敢乱雅, 大师之事也.修堤梁, 通沟浍, 行水潦, 安水臧, 以时决塞, 岁虽凶败水旱, 使民有所耘艾, 司空之事也.相高下, 视肥墝, 序五种, 省农功, 谨蓄藏, 以时顺修, 使农夫朴力而寡能, 治田之事也.修火宪, 养山林薮泽草木鱼鳖百索, 以时禁发, 使国家足用而财物不屈, 虞师之事也.顺州里, 定廛宅, 养六畜, 闲树艺, 劝教化, 趋孝弟, 以时顺修, 使百姓顺命, 安乐处乡, 乡师之事也.论百工, 审时事, 辨功苦, 尚完利, 便备用, 使雕琢文采不敢专造于家, 工师之事也.相阴阳, 占祲兆, 钻龟陈卦, 主攘择五卜, 知其吉凶妖祥, 伾巫跛击之事也.修采清, 易道路, 谨盗贼, 平室律, 以时顺修, 使宾旅安而货财通, 治市之事也.析急禁悍, 防淫除邪, 戮之以五刑, 使暴悍以变, 奸邪不作, 司寇之事也.本政教, 正法则, 兼听而时稽之, 度其功劳, 论其庆赏, 以时慎修, 使百吏免尽而众庶不偷, 冢宰之事也.论礼乐, 正身行, 广教化, 美风俗, 兼覆而调一之, 辟公之事也.全道德, 致隆高, 綦文理, 一天下, 振毫末, 使天下莫不顺比从服, 天王之事也."(왕선겸, 『순자집해』/ 『제자집성』 제2책, 베이징: 중화서국, 1954, 104쪽 참조)

109) [저]《周礼》六官. "开始将行政部门分为六大类, 每类之下各有六十官, 规模空前; 且六官之结构效法自然, 兼包阴阳五行."(펑린, 『주례의 주체 사상과 성서 연대 연구』, 증정판, 베이징: 중국인민대학교출판사, 2009)

계를 발견하였다. 360개의 관직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크게는 총재가 국정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큰 법'부터, 작게는 의사, 점복, 점술과 같은 분야까지 모든 것이 규범, 조례, 장법 등의 제약을 받는다. 그 중 큰 법은 깊은 사색과 숙고를 거친 치평治平의 도리이며, 작은 법은 오랜 실천과 기록, 숙고를 통해 정리된 최적의 실천 방식으로,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하다. 모든 부서와 직책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어 집행, 점검, 평가, 예산, 조정에 유리하므로, 이를 관원의 "행정 실무 지침서(從政手冊)"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기초로 각 부서는 서로 호응하며, "마치 팔다리의 모든 경맥(四肢百脈)이 하나로 통하여 정수리(囟門)에 이르는 것처럼, 막히거나 혼란스러운 바가 없다."[110] 방대한 국가 정무가 모두 "법망灋網" 아래 조직화 되어 있어, 이는 여태껏 보기 드문 사례이며, 그만큼 『주례』가 고도로 성숙한 행정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문헌임을 증명한다. 이 점만 보더라도, 『주례』의 성립 시기는 최소한 순자보다 앞설 수 없다.

최근 서양 법학계에서는 "연성법(軟法)"으로 불리는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공적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주민 공동체 간이나 기업 내부 등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약이 나타났고, 이를 "경법硬法"의 보완책으로 삼았다. 서양 학자의 이 시각을 빌리면, 우리는 『주례』에 나오는 "법灋"을 중국식 "연성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의의는 국가의 형벌 제도 외에, 국가의 의지를 정부 관리 체계의 모든 관원에게 분산시키고, 유연한 규정 형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육

110) [저] "若会四肢百脉而达于囟, 无或雝阏而弗鬯也."(손이양, 『주례정의』, 왕문금 · 진옥하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 1997, 2쪽 참조)

향六鄕, 육수六遂의 친민관親民官들이 주기적으로 백성을 모아 "법을 읽게(讀法)"하여, 육덕(知·仁·聖·義·忠·和), 육행(孝·友·睦·婣·任·恤), 육예(禮·樂·射·御·書·數)를 배우게 한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근본에서부터 조화롭게 만드는 "연성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또한 「월령月令」에서 이른 봄에는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한다. 새둥지를 뒤엎지 못하게 하고, 유충, 뱃속에 새끼를 밴 짐승, 갓 태어난 짐승, 막 날기를 배우는 새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어린 짐승을 잡거나 새알을 꺼내는 것도 금지한다."[111] 이는 모두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는 누구나 지켜야 하는 "선한 법(善瀌)"으로, 형벌로 위협하지 않는 것이니, 이 역시 "연성법"의 일종이다. 『주례』에서는 '경법'보다 '연성법'이 더 많고, 형벌보다 교육을 중시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문화의 특색이자, 『주례』가 후대에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주례』의 "법瀌"은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혹자는 이것이 법가의 법조문에서 유래했다고 보지만, 법가의 법조문은 대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부분은 규정이고, 뒷부분은 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점은 뒷부분에 있다. 하지만 『주례』의 법瀌은 그렇지 않은데, 규정 뒤에 처벌 조항이 거의 따르지 않는다. 필자의 소견으로, 『주례』의 법은 유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본다. 유가의 예는 예법과 절차를 중시하며, 기물·복식·희생 등에 대해 항목마다 자세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의례』, 「사관례」의 "관례일에 진설함(冠日陳設)" 절에서는, 한 상자 속에 담긴 여섯 가지 머리장식에 대해, 이름·색깔·크기·재질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치포관緇布冠을 쓸 때 사용하는 뒤덮는 갓끈, 갓끈에 매다는 청색의 갓끈 장식(冠纓),

111) [역]《月令》, 孟春之月. "禁止伐木.毋覆巢, 毋杀孩虫、胎天、飞鸟.毋麛, 毋卵."

길이 여섯 자이고 폭이 한 폭인 검은색 머리수건(緇纚), 피변皮弁을 쓸 때 사용하는 비녀(笄), 작변爵弁을 쓸 때 사용하는 비녀(笄), 옅은 붉은색 테가 둘려진 검은색 실로 짠 갓띠(緇组紘), 모두 하나의 궤짝에 담는다." 또 『의례』, 「빙례」의 "뜰에서의 진설(陳設庭實)"[112] 항목에서는 뜰에 진열되는 물품의 종류가 매우 많으나, 결코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다. 이러한 규정들을 모든 부문으로 확장한 것이 곧 『주례』의 법濛이다.

다시 『주례』의 형벌에 대해 말하자면, '대사구'에는 완전한 사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결코 법가식 법의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유가가 충분히 흡수하여 정립한 법이다. 유가와 법가의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모두 형벌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다. 사마담司馬談은 법가를 평하여, "친소親疏를 가리지 않고, 귀천貴賤을 구별하지 않으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한다."[113]라고 하였다. 그 법은 가혹하고 인정이 없으며, 혹독한 형벌로 사람을 협박하고, 강제하는 것을 능사로 삼는다. 손이양은 말하기를, 유가가 형벌을 수립하고 법을 세우는 것은, "이미 죄를 지은 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114]이며, "왕은 백성이 간사한 행위로 인해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금제禁制를 세우고 그 뜻을 보임으로써 악을 미리 막는다."[115]라고 하였다. 궁극적인 목표는 "형벌을 기약하되, 실제로는 형벌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刑期無刑)"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

112) [역]《仪礼•士冠礼》. "缁布冠缺项, 青组缨属于缺; 缁纚, 广终幅, 长六尺; 皮弁笄; 爵弁笄; 缁组纮, 纁边; 同箧."

113) [저] "不别亲疏, 不殊贵贱, 一断于法."(사마천, 『사기』, 베이징: 중화서국, 1982, 3291쪽 참조)

114) [저] "所以正人于已犯之后."(손이양, 『주례정의』, 왕문금 · 진옥하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 1997, 2710쪽 참조)

115) [저] "王者恐民以奸入罪, 故先设禁示之, 防其奸恶."(같은 책, 2710쪽 참조)

『주례』의 사법 이념은 "덕형德刑"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상서』, 특히 「여형」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형벌을 하늘의 위엄(天威)으로 간주하며, "모두 하늘의 위엄을 경외하여야 한다."[116]라고 여기고, 이를 엄숙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백성에게는 형벌을 너그럽게 적용하고, 절대 남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형벌을 써야 할 경우에는, 판결함에 반드시 정확함을 기해야 하며, "오형을 삼가 시행하여, 삼덕三德을 완성한다."[117]라는 목표 아래, 덕으로 형벌을 이끌고, 어진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로 신중히 심문하며 판결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매우 방대하여, 별도로 논문을 작성하여 상세히 논할 것이다.

유가와 법가는 본래 대립되는 사상으로, 서로 견줄 수 없는 관계였으나, 순자에 이르러 비로소 양자 간의 소통과 융합이 시작하였다. 서한西漢 초기에 유가는 크게 하나로 통일된(大一統) 왕조의 필요에 부응하여 음양, 오행, 법가의 사상을 흡수하여 하나로 통합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에는 독립된 법가라는 학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주례』의 사법 부문은 「추관」에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이는 유가 사상의 유기적인 구성 부분 중 하나로, 어떻게 백성을 교화할지와,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는 곧 '주나라의 도(周道)'를 표현한 것이지, 결코 유가와 대립하거나 경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한나라 초기의 육가陸賈, 가의賈誼 등이 주장한 국가 통치 사상과 일치하는데, 이는 곧 『주례』가 비교적 후대에 성립된 문헌임을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

혹자가 묻기를, 『주례』의 저자가 이미 유가의 덕치를 극도로 높였다면, 어째서 또 이처럼 상세한 사법 제도를 설치하였는가? 이는 불필요

116) [역]《呂刑》. "具严天威."

117) [역] "惟敬五刑, 以成三德."

한 작업이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 사회는 극히 복잡하여, 새로운 문제와 오래된 문제가 끊임없이 솟아나므로, 결코 '인의仁義' 두 글자만을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한 직후, 즉시 '관채지난管蔡之亂'이 일어났고, 주나라 내부에서도 주벽酒癖, 군음群飮 등의 풍조가 싹텄으니, 문치文治를 지향하더라도 반드시 무비武備를 갖추어야 했으며, 비상시에는 비상 상황에 필요한 수단이 요청되었다. 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폭력에는 폭력으로, 범죄에는 형벌로 대응하는 것도 여전히 필요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 진보의 주축은 문화와 교육(文教)에 있어야 하고, 사법은 '후수後手', 즉 예비 수단이며, 최상의 상태는 비록 법이 준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주나라의 "성왕과 그의 아들 강왕康王의 치세(成康之治)" 시기 동안 형벌이 사십여 년간 쓰이지 않았던 것이야말로, 유가가 꿈꾸는 치국治國의 궁극적 이상 경지라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2025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18일)

참고문헌

손이양孙诒让, 『주례정의周礼正义』, 왕문금王文锦·진옥하陈玉霞 점교, 베이징: 중화서국中华书局, 1997.

왕국유王国维, 『우정명고석盂鼎铭考释』; 『관당금고문고석观堂今古文考释』; 『왕국유유서王国维遗书』 제6책, 상하이: 상하이고적서점上海古籍书店, 1983.

장정랑张政烺, 『서주 청동기 명문 시대 구분의 역사적 증거(西周青铜器铭文分代史征)』, 베이징: 중화서국中华书局, 1986.

진몽가陈梦家, 『서주 동기 단대西周铜器断代』, 베이징: 중화서국中华书局, 2004.

『수호지진묘죽간睡虎地秦墓竹简』, 베이징: 문물출판사文物出版社, 1990.

가공언贾公彦, 『주례소周礼疏』, 펑린彭林 점교; 『유장儒藏』(정화편精华编) 제37·38책, 베이징: 베이징대학교출판사北京大学出版社, 2022.

고힐강顾颉刚, 「주공 제례의 전설과 『주관』이라는 책의 출현(周公制礼的传说和《周官》一书的出现)」, 『문사文史』, 1979년 제6호.

공영달孔颖达, 『상서주소尚书注疏』; 『십삼경주소十三经注疏』 제1책, 타이베이: 예문인서관艺文印书馆, 2011.

왕선겸王先谦, 『순자집해荀子集解』; 『제자집성诸子集成』 제2책, 베이징: 중화서국中华书局, 1954.

펑린彭林, 『주례의 주체 사상과 성서 연대 연구(《周礼》主体思想与成书年

代研究증정판增订版)』, 베이징: 중국인민대학교출판사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사마천司马迁, 『사기史记』, 베이징: 중화서국中华书局, 1982.

국문요약

『주례周禮』에서의 "법灋"자는 경학자들에 의해 "법法"자의 고문으로 해석되었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형법刑法"의 의미로 풀이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주례』를 법가法家의 저술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 『주례』에서 나타나는 "법灋"자의 용례를 자세히 검토하면, 이는 형법과 거의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전례典禮, 문물제도(文制), 관법官法, 규정規定, 법식法式, 수량數量, 기술 규범技術規範 등을 통칭하는 개념임이 드러난다. 이는 『주례』의 행정 관리가 이미 형식화되고, 조직화 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주례』의 사법 시스템과 심국審鞫 절차 등은 「추관秋官」에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사구大司寇"의 여섯 조항의 관법에서는 덕교德教의 법을 구현하는 "오형五刑"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환토圜土, 가석嘉石 등의 온화한 방법으로 파민罷民을 교화하며, 폐석肺石을 통해 약자 집단을 돌보는 방식을 그 뒤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정오형正五刑"은 "소사구小司寇"와 "사형司刑"으로 미루어 배치하였다. 이러한 순서는 교화를 근본으로 삼고 범죄 예방을 우선하는 유가儒家의 "덕형德刑" 사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주周 초기 성강成康 시대의 "형벌이 사십여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치평治平의 경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주제어 | 법灋, 덕형德刑, 대사구大司寇, 오형五刑, 연성법軟法.